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

2023. 11.



환경부

목 차

I. 목 적	1
II. 적용 범위	1
III. 그간의 추진경위 및 개정연혁	2
IV. 사업추진 관계법령	2
1. 수도사업 재원	2
2.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	3
3. 관련기준	3
V. 국고보조사업 신청	4
1. 개 요	4
2. 현대화사업 예산 편성절차	6
3. 사업 검토·조정 기준	9
VI.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	12
1.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12
2.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	14
3. 보조사업 실적보고(완료·폐지·회계연도 종료) 및 점검	16
4. 사전기술검토	18
5. 보조사업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	19
6. 실집행을 점검관리	22
7. 보조사업 사후관리 계획수립	22
8. 보조사업 사후관리 실적보고	24

9. 예산편성·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운영에 따른 유의사항	25
10. 기관별 조치사항	26
VII.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29
1. 기본방향	29
2. 사업주요내용	35
3. 기타행정사항	44
VIII. 수도사업 경영개선	45
1. 개요	45
2. 수도사업 경영개선 계획 및 실적평가	46
3.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	47
IX. 용어정의	48
붙임1. 사업계획서 등 서식자료	53
붙임2. 수도사업 경영개선실적 평가기준 및 보고양식	123

I. 목 적

○ 지침목적

-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국고보조 신청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수도사업 경영개선 사항 등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사업목적

- (노후 상수관망 정비)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녹물발생 등을 방지하고, 누수저감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으로 가뭄 등에 선제적 대응할 뿐만 아니라,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관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도사업을 선순환 구조로 유도하기 위함
- (노후 정수장 정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정수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정수장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정수장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수도사업을 선순환 구조로 유도하기 위함

II. 적용 범위

- 이 지침은 「수도법」 제75조(국고보조 등)에 따라 국고가 보조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노후 정수장 정비)에 적용한다.
- 다만, 사업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수립('16.9, 기획재정부)에 미포함된 사업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성과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추진할 수 있다.

Ⅲ. 그간의 추진경위 및 개정연혁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 결정(2009.12, 국회)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업무처리지침 제정(2010. 4, 환경부)
- 지방상수도시설 노후도 실태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2015.12, 환경부)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고보조 결정(2016. 3, 국가재정전략협의회)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2016. 8)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 1차 개정(2020. 1)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 2차 개정(2021. 1)
-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2020.01 ~ 2023.12)
- 후속 노후지방상수도 정비사업 타당성 연구(2023.12)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 3차 개정(2023.11)

Ⅳ. 사업추진 관계법령

1. 수도사업 재원

- 「수도법」 제2조(국가 책무)
-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2.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

-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
- 상수도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환경부)

3. 관련기준

-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2021.04, 환경부)
-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021.05, 환경부)
-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매뉴얼(2007.12, 환경부)
- 상수관망 최적관리 기술안내서(2010.11, 환경부)
- 상수도설계기준(2022, 환경부)
-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2017. 5, 환경부)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2021.02, 환경부)

V. 국고보조사업 신청

1. 개 요

가. 지원규모

- ① (지원비율)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보조(정률 보조)를 원칙으로 한다.
- ㉠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 국고 50% + 0~20%
 - ※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사업 경영의지에 따른 국고보조 차등 추가지원 0~20%(2년차 국고보조)
 - ※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0~20% 국고보조율 차등 추가 지원(3년차 이후 국고보조)
- ㉡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 국고 50%
- ② (지원형태) 시·군 자본보조(국고지원율을 기준으로 지방비 확보)
- ③ (지원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나. 지원대상

- ① 기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17~'23년 착수사업)

구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지원 검토 대상	유수율 70%미만 급수구역이 포함된 시·군	경과년수 20년 이상 (기계식 여과는 10년 이상)이면서 정수 처리 기능이 저하된 시설
지원 범위	- 관망정비 공사 (시·군내 유수율 70%미만 급수구역) - 누수탐사 및 정비 (시·군내 유수율 70%미만 급수구역) -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시·군내 전체 급수구역)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시·군내 전체 급수구역)	- 정수장 개량 공사 - 정수장 재건설 공사 - 정수장 통합재건설 공사 (공사별 시설 운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포함)

- 주) 1.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지원대상 급수구역의 유수율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유수율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사전기술검토 시 재검증하여 사업 대상 급수구역을 최종 확정한다.
2.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계획이 사전기술검토 요청 시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사전기술검토 시 재검증하여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②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24년이후 착수사업)

구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지원 검토 대상	유수율 85%(특광역시 92%) 미만 급수 구역이 포함된 시·군	경과년수 20년 이상 (기계식 여과는 10년 이상)이면서 정수 처리 기능이 저하된 시설
지원 범위	- 관망정비 공사 (시·군내 유수율 85%미만 급수구역) - 누수탐사 및 정비 (시·군내 유수율 85%미만 급수구역) -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시·군내 전체 급수구역)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시·군내 전체 급수구역) ※ 유수율 85%(특광역시 92%) 이상 급수 구역은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노후재질관 교체만 국고보조	- 정수장 개량 공사 - 정수장 재건설 공사 - 정수장 통합재건설 공사 (공사별 시설 운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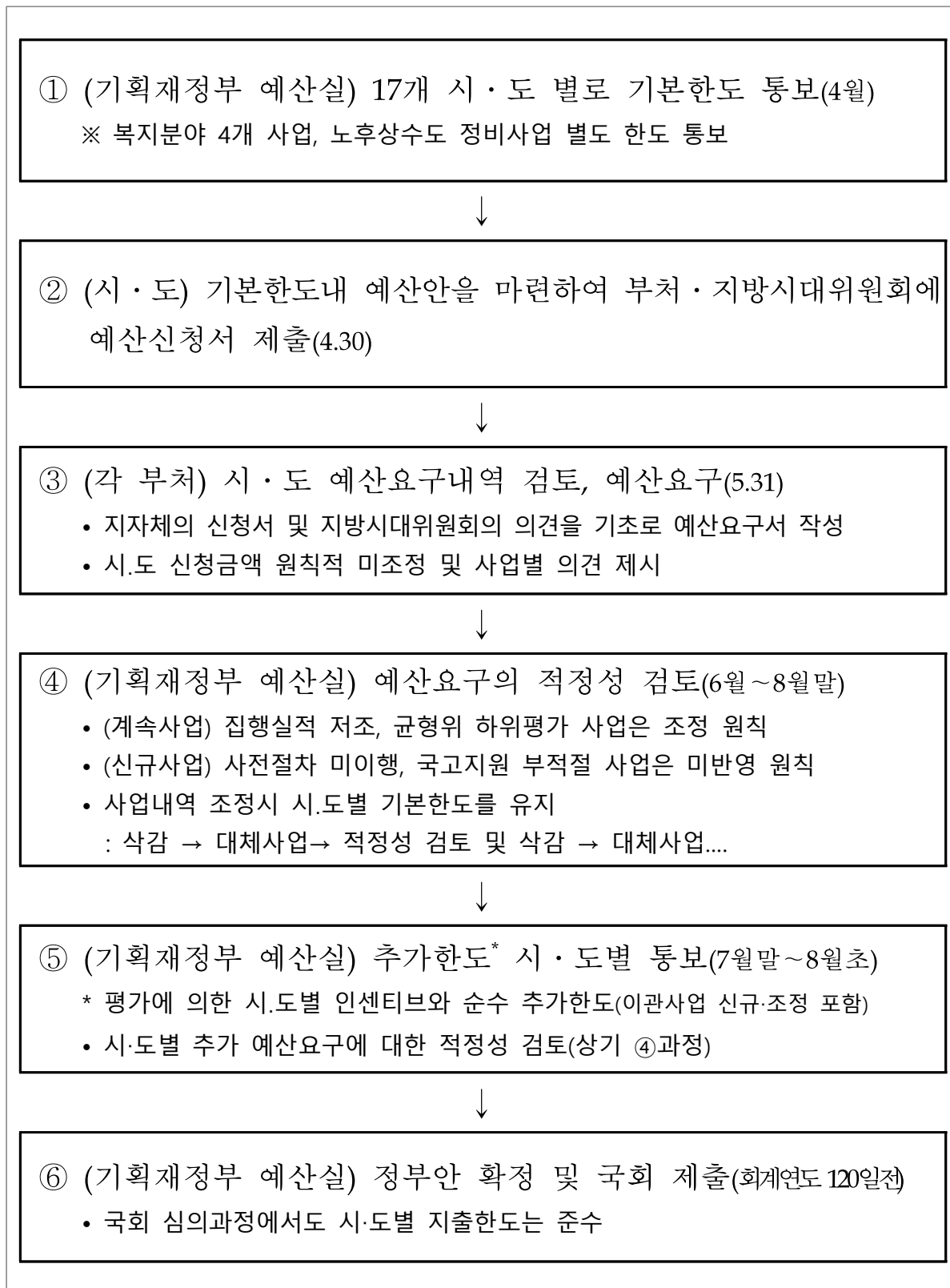
※ 단, '23년 착수사업 중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착수한 사업 포함

- 주) 1.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지원대상 급수구역의 유수율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유수율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사전기술검토 시 재검증하여 사업 대상 급수구역을 최종 확정한다.
2.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계획이 사전기술검토 요청 시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사전기술검토 시 재검증하여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다. 사업비 지원범위

- ①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건설사업관리비, 시설부대비 등) 등으로 구성한다.
- ② 사업비 신청 및 집행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른다.
- ③ 국고지원 최초년도에 준공 예정인 설계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설계·시공일괄입찰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포함).

2. 현대화사업 예산 편성절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따름)



가. 예산 신청

① 지원규모 검토일정

- ㉠ 시·군(4월15일) → 시·도(4월30일) → 유역(지방)환경청(이하 “유역 환경청”)(5월15일)

② 기관별 조치사항

- ㉠ (시·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시·도에 예산신청서를 제출한다(4월15일)
 - 사업계획서[양식 1](※ 신규사업 한정)
 -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서[양식 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신청서[양식 4]
- ㉡ (시·도) 시·군·구의 신청, 지방비 부담능력 및 시·도 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조정하여 예산을 신청한다.

③ 고려사항

- ㉠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은 환경부의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하며, 계속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 (연차별 예산계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블록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우수율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망정비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연차별 공정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사전 이행절차) 예산을 신청하기 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사전 이행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②항에 의거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 사전이행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예산신청년도(국고보조 전년도) 중 국고 정부안 예산 반영 전까지 사전이행절차 완료 가능 시에는 신청 가능
- ㉣ (국고보조금액 산정)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① 예산안 검토일정

㉠ 유역환경청(5월15일) → 환경부(5월31일) → 기획재정부

② 기관별 조치사항

㉡ (환경부) 지자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5월31일)

※ 예산요구서 작성 시, 시·도의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요구내용의 적정성, 조정방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

-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서[양식 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신청서[양식 4]

다. 국고보조금 인센티브 지원

① 지원규모 검토일정

㉢ 시·군 → 시·도(2월말) → 유역환경청 → 환경부

② 기관별 조치사항

㉣ (시·군)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사업 경영의지 보고서·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한다

-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보고서[양식 11, 12]

㉤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보고서를 취합·검토하여 유역환경청에 제출한다.

㉥ (유역환경청)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보고서를 취합·검토하여 환경부에 제출한다.

㉦ (환경부)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보고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통한 지자체별 인센티브 내역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③ 고려사항

㉑ 지원규모

-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 0~20%
 -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사업 경영의지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2년차의 0~20% 국고보조율을 차등하여 추가 지원한다.
-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 해당없음

㉒ 평가 시 고려사항

※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사업 경영의지 평가(2년차 국고보조)

- 인구감소지역
- 성장촉진지역
- 지방비 확보
- 사업추진의지

※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보고서 평가 결과(3년차 이후 국고보조)

- 자료제출 적정성
 - 경영실적 보고서
 - 총괄원가 계산서
- 수도요금 현실화
 - 수도요금 인상액
 - 원가절감
 - 수도요금 인상계획의 구체성
- 운영관리 효율화
 - 우수제품 사용실적
 - 광역자치단체 노력
 - 노후시설 조기정비 노력
 - 사후유지관리/사업추진의지
- 기타
 - 정부정책 수용의지
 - 지역균형발전

3. 사업 검토·조정 기준

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① 총사업비, 총국고의 적정성

- ㉠ 총사업비 산정근거의 적정성, 국고 비지원대상 포함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계상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반영을 목적으로 터무니없게 총사업비를 적게 산정 후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사례방지 (예산 신청 시 총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나. 사업추진의 원활성

① 내부요인에 의한 문제점 해결 여부

- ㉠ 관련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예산 반영 시 자금 사장의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한다.

- ㉡ 절대공기 및 재원사정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이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② 외부요인에 의한 문제점 해결 여부

- ㉠ 입지선정, 용지보상 등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한다.

- ㉡ 국회, 감사원, 언론 지적 등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수립여부를 검토한다.

③ 기 타

- ㉠ 해당 지자체 상수도 사업의 전년 집행을 및 관련 상수도 사업의 집행 정도를 검토한다.

- ㉡ 예산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전년도 기준 예상 사업진도 및 집행률 현황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산정여부를 검토한다.

다. 투자효율성

- ① 인근 수도시설과의 통합을 통한 예산 절감
- ㉠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인근 지역에 상수도 시설이 있는 경우 경제성,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

라.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

- ① 상수도 재원에 적합한 예산 조정
 - ㉠ 계속사업의 경우 엄격한 총사업비 관리와 사업진도 및 집행상황을 고려한 예산지원으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 당해년도에 전액 집행이 가능한 규모 내에서 편성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의 내역 변경을 최소화

VI.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

1.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가. 보조금의 교부

- ① 교부신청(시·군 → 시·도 →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 ㉠ (시·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한다.
 - 사업추진계획서[양식 5]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양식 6]
 - ㉡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추진계획서 취합·검토하여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에 제출한다.
- ② 교부결정 및 통지(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 시·도 ↔ 시·군)
 - ㉠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사업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 여부, 계획 및 실적, 지방비 확보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사업별로 보조금 교부조건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시·군 및 관련기관(시·도,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한다.
 - 교부결정 통지문서와 함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교부결정을 통지한다.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보조금 교부결정 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내역을 철저히 검토하고, 부득이 잔액 발생 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교부결정한다.
 - ㉡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 발생 시 변경 또는 취소 사유를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협의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 ㉔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결정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시·군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

나. 보조금의 집행

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㉕ (시·군)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환경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환경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이월

- ㉖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된 보조금은 사업의 성격 및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 ㉗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0조 제3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된 보조금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후 남은 집행잔액은 해당 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환경부와 사전 협의 후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기재한 명세서를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환경부로 제출한다.

2.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

	시·군		시·도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보조 사업 수행 상황 보고 및 점검	사업수행상황 보고서 제출	☞ 매분기 익월 5일	취합·검토	☞ 매분기 익월 10일	사업수행상황보고 서 검토 및 점검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반영	☞	결과 통보	☞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주) 1. 점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가. 보고 및 점검일정

- ① 시·군(매분기 익월 5일) → 시·도(매분기 익월 10일) →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나. 기관별 조치사항

- ① (시·군)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한다(매분기 익월 5일까지).
- ㉠ 사업수행상황보고서[양식 7]
※ 사업개요, 사업추진 현황, 분기말 예산집행상황, 계획대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②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취합·검토하여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에 제출한다(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③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세부사업별 수행상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시·군이 관련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 수행명령 조치 요구시에는 시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군에 통보한다.

다. 고려사항

① 보고대상

- ㉔ 사업완료 또는 폐지로 인하여 종료된 사업(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이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세부사업

② 주요 점검사항

- ㉔ 기본 또는 실시설계서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적정 이행여부
- ㉔ 사업추진 계획 대비 추진실적, 부진사유 및 대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인·허가사항 준수여부
- ㉔ 지방비 확보 실태, 예산 실행 실적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③ 점검결과 조치

- ㉔ (수행명령) 시·군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㉔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 ㉔ (예산조정) 지방비 미확보, 보조금 집행실적 부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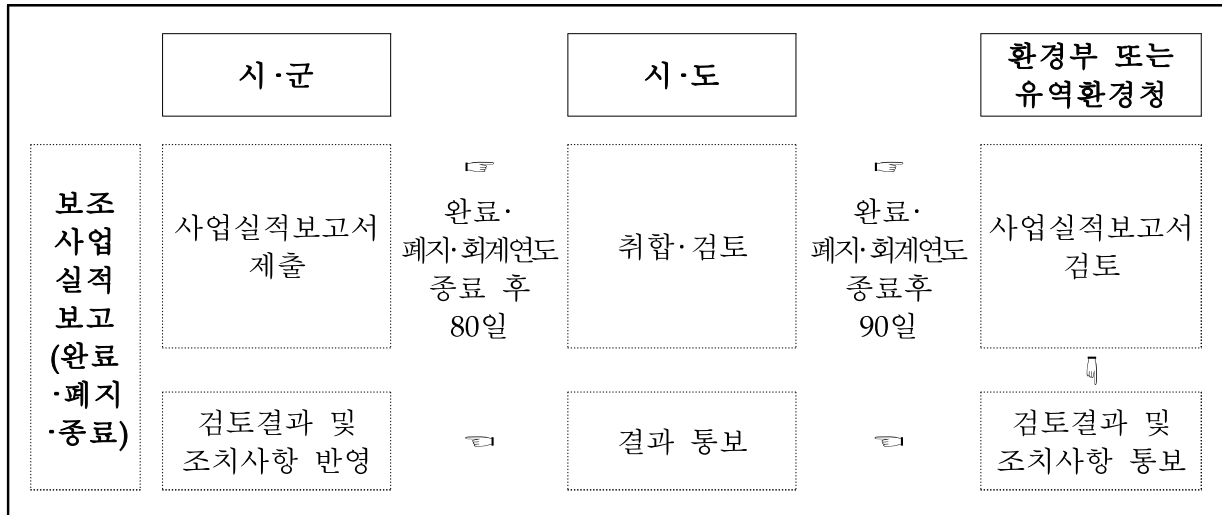
라. 검사 및 확인

- ①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시 시·도 또는 시·군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을 검사 및 확인할 수 있다.

- ② 검사 및 확인 시기는 다음과 같다.

- ㉔ 보조금 예산 신청 시 또는 교부결정 시
 - ㉔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취소명령·예산조정 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3. 보조사업 실적보고(완료·폐지·회계연도 종료) 및 점검



가. 보고일정

- ① 시·군(완료·폐지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로부터 80일) → 시·도(완료·폐지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로부터 90일) →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나. 기관별 조치사항

- ① (시·군) 보조사업의 완료, 폐지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업 실적보고서(완료·폐지)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한다(완료·폐지된 날로부터 80일까지).
- ㉠ 사업실적보고서(완료·폐지)[양식 8]
- ②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완료·폐지)를 취합·검토하여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에 제출한다(완료·폐지된 날로부터 90일까지).
- ③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사업실적보고서(완료·폐지·회계연도 종료)의 관계법령·규정 준수,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집행잔액 사용내역, 과목별 사용금액,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해당 시·군에 통보한다.

다. 고려사항

① 점검결과 조치

- ㉠ (환경부) 사업실적보고서(완료·폐지·회계연도 종료)를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② 사업 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의 첨부자료

- ㉠ (공통)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 서류(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준공검사서,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 ㉡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사업 준공 전 1년간의 우수율 측정자료가 포함된 성과보증보고서(성과판정 심의 결과를 반영), 사업 완료에 따른 효과분석, 사후관리계획서, 준공 후 유지관리 계획을 포함한 유지관리지침서, 설계성과품 등

※ 성과보증기간의 조정은 성과보증 개시 3개월 전까지 현대화사업 성과판정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받아 사업기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경우 6개월로 조정(12~2월 중 2개월 이상 포함) 가능하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업무편람개정('17.1) 이전 지자체와 수탁기관간의 협약 조건에 성과보증기간이 6개월로 명시된 경우 협약을 준용하되 12~2월 중 2개월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효과분석에는 취수량, 생산량, 공급량 감소, 전력량감소, 생산비감소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

- ㉢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시운전기간동안 성능보증결과가 포함된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사업 완료에 따른 효과분석, 준공 후 운영관리 계획을 포함한 유지관리지침서, 설계성과품 등

③ 자료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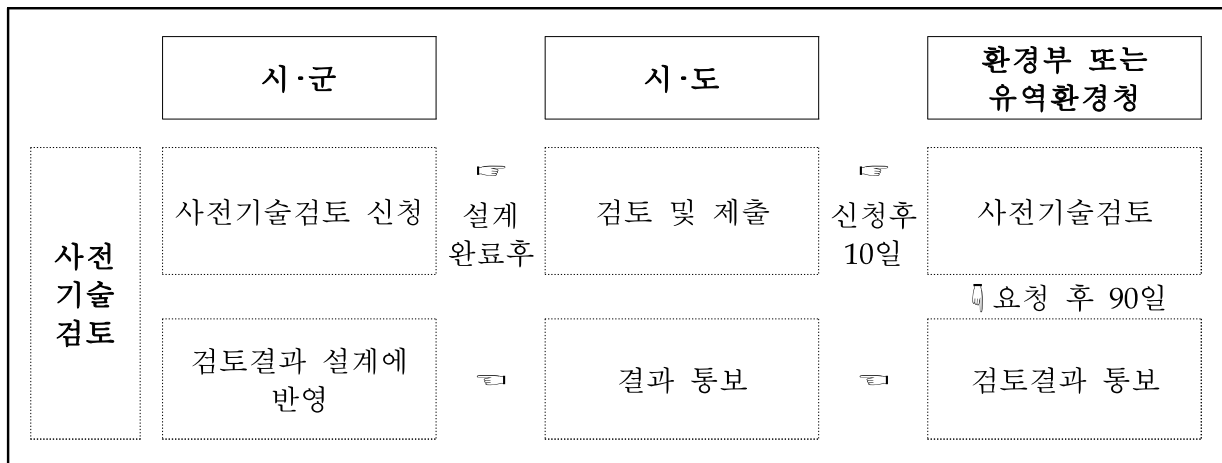
- ㉠ (시·군) 환경부로부터 보조금 사용 명세서 검토, 사업비 적정 집행 검토 등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환경부) 보완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시·군은 다음년도 보조사업 선정 시 제외 등 재정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라. 검사 및 확인

- ①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시 시·도 또는 시·군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을 검사 및 확인할 수 있다.
 - ② 검사 및 확인 시기는 다음과 같다.
 - ㉠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보고 시
 -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취소명령·반환명령 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4. 사전기술검토



가. 검토 일정

- ① 시·군(공사발주 전) → 시·도(사전기술검토 신청 후 10일) →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나. 기관별 조치사항

- ① (시·군) 기본 또는 실시설계서[안]이 작성되면 공사발주(우선사업 대상지 공사 등 제외)전 사전기술검토를 시·도에 신청한다.
- ㉠ 제출서류 : 설계보고서 등 설계도서 1식
- ②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설계도서(사전기술검토용)를 검토한 후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에 제출한다(사전기술검토 신청 후 10일까지).

- ③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설계도서(사전기술검토용)를 검토한 후 사전기술검토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한다.(사전기술검토 요청 후 90일 이내)

다. 고려사항

① 자료보완

- ㉠ (시·군) 기술검토시 관계 자료가 미비하여 환경부로부터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에서 관계자료 보완기간은 검토기간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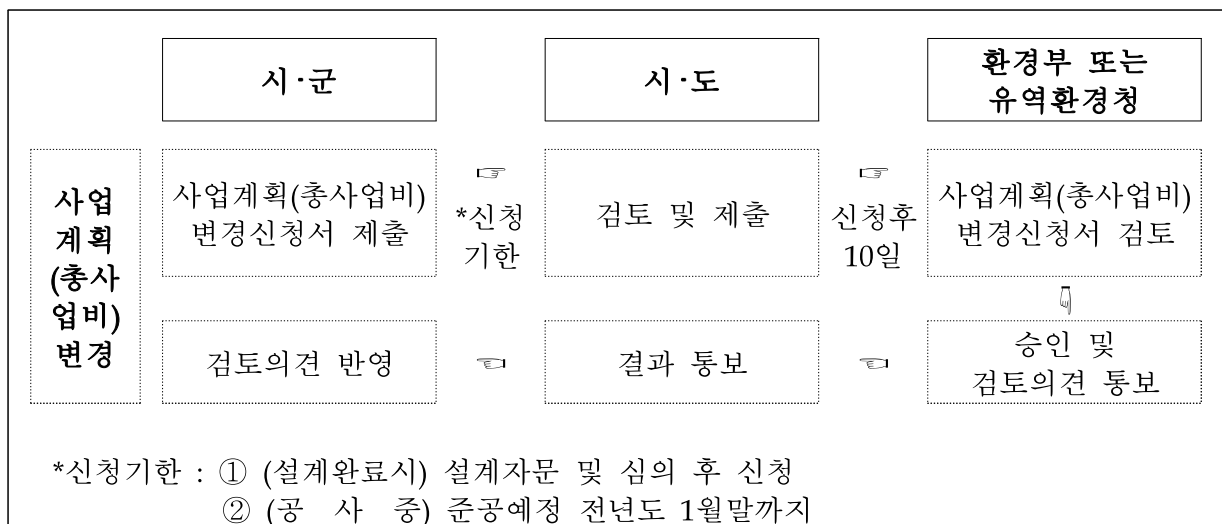
② 검토결과 조치

- ㉠ (시·군) 사전기술검토 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조치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한다.

③ 우선 사업대상 급수구역 검토

- ㉠ (시·군) 사전기술검토 전에 우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여 우선사업대상 급수구역을 선정하여 누수탐사, 긴급관망정비, 유량계 설치 등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5. 보조사업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



가. 변경 일정

- ① 설계완료에 따른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

- ㉠ 시·군(설계자문 및 설계심의 완료 후) → 시·도(사업계획 변경신청 후 10일) →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 사전기술검토 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VE) 검토를 수행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등을 별도로 개최하여 설계자문 및 설계심의 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한 후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신청

- ② 공사중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

- ㉠ 시·군(준공예정 전년도 1월말까지) → 시·도(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신청 후 10일) →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나. 기관별 조치사항

- ① (시·군) 예산신청시 제출한 기존사업계획(또는 설계완료시 변경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한다.
- ㉠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신청서[양식 2]
- ②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에 제출한다(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신청 후 10일까지).
- ③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및 검토의견을 해당 시·군에 통보한다.

다. 고려사항

- ① 승인대상

- ㉠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물량 등의 변경 시

※ 다만, 기준단가의 변동 등에 따라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규모 변경없이 사업물량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도서' 제출을 승인에 갈음함.

- ② 설계완료시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

- ㉠ 매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고지원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의 산정은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신청 및 검토결과에 따른다.

㉔ 시·군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단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㉕ 시·군은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의한 발주당시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하거나 사업내용 또는 규모 등이 변동되는 경우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환경부(유역환경청)과 총사업비 또는 사업규모 변동내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

㉖ 매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고지원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의 산정은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신청 및 검토결과에 따른다.

㉗ 시·군은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단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㉘ 다음 연도 준공 예정사업의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 시,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 요청하여야 하며, 준공 연도에는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을 불허한다. 단, 총사업비 증액이 없이 예산항목간 조정은 가능하다.

< 예산항목간 조정범위 >

구 분	조정범위	비고
블록구축공사	±20%이내	
관망정비공사		
유지관리시스템		
누수탐사 및 정비	제한없음	

㉙ 사업물량 증가 등으로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을 착공한 후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 ㉠ 총사업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법령개정,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1회로 한정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총사업비 안에서 조정,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 다만, 총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실집행을 점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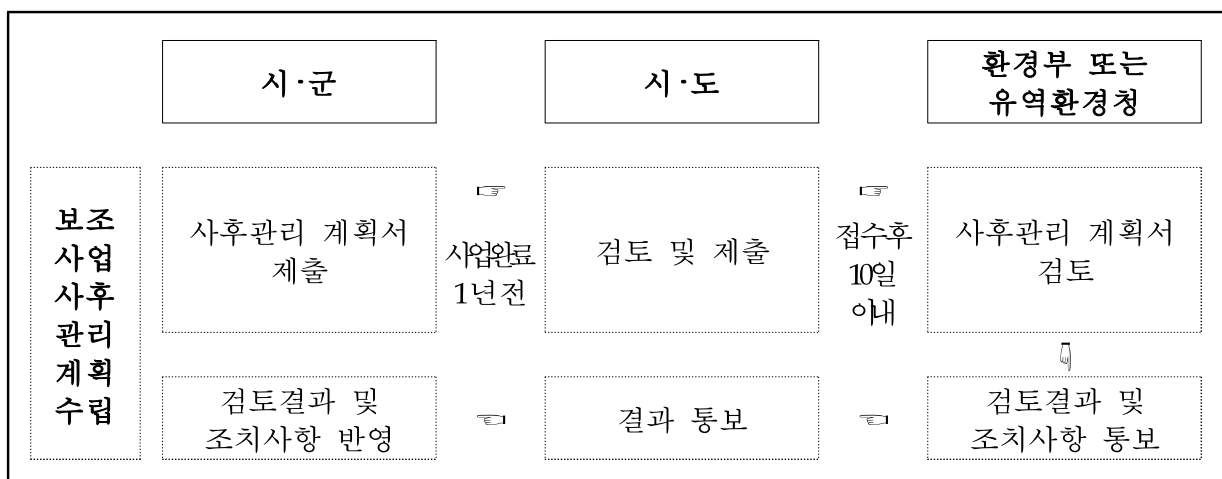
가. 재정집행 점검반 구성·운영

- ① (환경부) 시·도와 합동으로 재정집행을 점검·독려하기 위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점검반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시·도별 업무 담당사무관 등을 반원으로 구성하여 연2회 이상 재정집행 점검 및 점검회의를 실시한다.
- ㉡ 점검반장은 사업추진 애로사항 또는 집행 장애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행 점검회의에서 논의한다.

나.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방안

- ① 분기별 집행결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집행점검회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결한다.
- ② (시·도 또는 시·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 사업의 조기추진 방안 등을 강구한다.

7. 보조사업 사후관리 계획수립



가. 계획수립 일정

- ① 시·군(사업 완료 1년 전) → 시·도(시·군 제출 접수 후 10일 이내)
→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나. 기관별 조치사항

- ① (시·군) 사업완료 1년 전 사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한다(사업 완료 1년 전).

※ 단, 2017년 대상 사업은 사업완료 6개월 전까지 사후관리 계획서를 제출한다.

- ㉠ 사후관리 계획서[양식 9]

- ②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후관리 계획서를 검토하여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에 제출한다(시·군 제출 접수 후 10일 이내).

- ③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사후관리 계획서를 검토하여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을 해당 시·군에 통보한다.

※ 사후관리계획서는 수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전문기관에서 기술검토 가능

다.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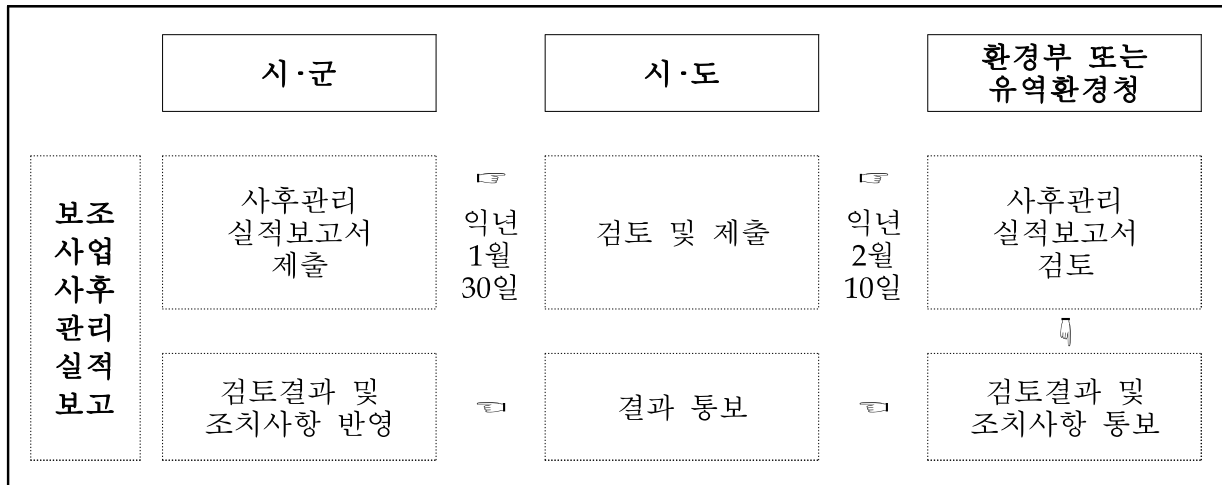
- ① 사후관리 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 (시·군) 사업 완료 후 유수율 제고 및 유지, 먹는물 수질기준 준수, 수도요금 현실화, 총괄원가 절감방안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검토결과 조치

- ㉠ (시·군) 사업 완료 후 10년간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부 조치사항을 반영한 사후관리 계획서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보조사업 사후관리 실적보고



가. 실적보고 일정

- ① 시·군(익년 1월30일) → 시·도(익년 2월10일) →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나. 기관별 조치사항

- ① (시·군)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한다(익년 1월30일까지).
- ㉠ 사후관리 실적보고서[양식 10]
- ②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에 제출한다(익년 2월10일까지).
- ③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을 해당 시·군에 통보한다. 단, 지자체 사후관리 수행 중 연속 2개년 실적 부진시 자구책 마련, 전문기관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수립한다.

※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는 수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전문기관에서 기술검토 가능

다. 고려사항

- ① 검토결과 조치
- ㉠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사후관리 실적보고서 검토결과 및 조치사항에 따라 시·군으로 하여금 개선·보완토록 조치한다.

② 불이행 시 조치

- ㉠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시·군이 보조사업 사후관리 실적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환경부의 개선·보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선정하고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등 환경부 주관평가에 반영한다.

※ 보조사업 사후관리 실적보고 기간(10년)이 지난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해당 시·군이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

9. 예산편성·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운영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보조사업 등록(예산편성)

- ① (기획재정부) 정부 예산이 확정될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기획재정부)을 통해 시·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행정안전부)으로 확정내시 통보한다.
- ② (시·도) 통보된 확정내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시·군 확정내시를 다시 배분한다.
- ③ (시·군) 시·도에서 배분된 확정내시에 따라 보조사업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나. 국고보조금 교부

- ① (시·군) 보조사업 등록 완료 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교부신청을 한다.
- ②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는 지자체의 교부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계좌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 ① (시·군) 매월 보조사업의 집행현황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 ②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매월 지자체의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확인한다.

- ③ 일반회계를 운용하지 않는 수도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시스템 연계·운영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 도입·운영에 따른 유의사항

- ① 시·도의 확정내시 배분 및 시·군의 보조사업 등록절차는 별도로 통보되는 세부 내시자료에 따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절차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음.
- ②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는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매월 별도로 보고하는 집행현황 자료와 일치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별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집행실적 입력을 누락하거나 오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집행실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0. 기관별 조치사항

가. 환경부

- ① 국고보조사업 신청(사업대상 선정, 예산편성, 인센티브지원)
- ㉠ 신규사업
- 사업대상 시·군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신규사업 대상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규모 결정
- ㉡ 계속사업
- 국고보조사업 검토의견 및 부처요구액(인센티브 지원규모 결정 포함)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 시·군의 예산신청 내역검토 및 기획재정부에 검토의견 제출
- ②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 교부 및 집행, 공정보고 등)

- ㉠ 시·군의 교부신청 내역검토 후 교부 결정 및 통보
- ㉡ 시·군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검토 및 조치사항 통보
- ㉢ 시·군의 사업실적 검토 및 조치사항 통보
- ㉣ 시·군의 사전기술검토 및 조치사항 통보
- ㉤ 시·군의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신청 검토 후 승인 및 조치사항 통보
- ㉥ 시·군의 사후관리 계획·실적보고 검토 및 조치사항 통보

나. 유역환경청

- ① 국고보조사업 신청(사업대상선정, 예산편성, 인센티브지원)
 - ㉠ 시·도에서 제출한 국고보조사업 신청 관련 각종 자료를 취합 및 검토 후 환경부에 제출
- ②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 교부 및 집행, 공정보고 등)
 - ㉠ 시·도에서 제출한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 관련 각종 자료를 검토 및 통보

다. 시·도

- ① 국고보조사업 신청(사업대상선정, 예산편성, 인센티브지원)
 - ㉠ 시·군에서 제출한 국고보조사업 신청 관련 각종 자료를 취합 및 검토 후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에 제출
- ②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 교부 및 집행, 공정보고 등)
 - ㉠ 시·군에서 제출한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 관련 각종 자료를 취합 및 검토 후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에 제출

라. 시·군

- ① 국고보조사업 신청(사업대상선정, 예산편성, 인센티브지원)
 - ㉠ 신규사업
 - 사업대상 시·군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서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확정·통보된 예산에 맞춘 사업계획서로 수정·보완하여 제출
- ㉠ 계속사업
 -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서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사업 경영의지 보고서·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②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 교부 및 집행, 공정보고 등)
 -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사업추진계획서 포함) 작성 및 제출
 - ㉢ 사업수행상황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사업실적보고서(완료·폐지) 작성 및 제출
 - ㉤ 기본 및 실시설계 후 공사발주전 사전기술검토 신청
 - ㉥ 설계 자문 및 심의 후 사업계획 변경신청
 - ㉦ 사후관리 계획서 및 사후관리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VII.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1. 기본방향

가.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① (노후 상수관망 정비)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녹물발생 등을 방지하고, 누수저감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으로 가뭄 등에 선제적 대응할 뿐만 아니라,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관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도사업을 선순환 구조로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시설 노후화 등으로 정수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정수장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정수장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수도사업을 선순환 구조로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범위 및 목표

① 기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17~'23년 착수사업)

구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사업기간	설계기간 포함 5년 (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시 기본계획 포함)	설계기간 포함 3~5년 (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시 기본계획 포함)
사업대상	지자체 단위 (지자체내 유수율 70% 미만 급수구역) ※ 유수율 70% 이상 급수구역은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만 국고 보조	정수장 단위 (개별 정수장 단위 또는 2개 이상의 정수장 통합 추진)
사업목표	관망정비 공사가 포함된 사업대상 급수구역 목표유수율 85% 이상	먹는물 수질안전성 확보
사업내용	- 관망정비 공사 - 누수탐사 및 정비 -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 정수장 개량 공사 - 정수장 재건설 공사 - 정수장 통합재건설 공사 (공사별 시설 운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포함)

- 주) 1.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사업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 조기 성과달성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사업비(집행·재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총사업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유수율 70% 미만 급수구역 중 과거 국고수혜지역 등 사업타당성 또는 사업효과가 낮거나 사업비가 과다한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고수혜지역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17년~),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 사업대상구역 선정에 적용하는 유수율 산정은 기본설계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상수도시설 노후도 실태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성조사('15년, 환경부)에서 유수율 70%미만이었으나 자구적 노력으로 70%이상으로 향상된 경우, 지자체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구역 여부를 판단한다.
5.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체계수립('16.9, 기재부)에 포함되어있으나 유수율이 70%이상인 시군의 경우 블록분할 및 고립을 우선시행하여 노후관 정비가 시급하고 유수율이 낮은 급수구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6.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대상지 선정 시 우선순위 정리가 필요할 경우 소요예산대비 편익순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 민원 등 감안 필요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②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24년이후 착수사업)

구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사업 기간	설계기간 포함 6년 (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시 기본계획 포함)	설계기간 포함 5년 (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시 기본계획 포함)
사업 대상	지자체 단위 (지자체내 유수율 85%(특광역시 92%) 미만 급수구역) ※ 유수율 85%(특광역시 92%) 이상 급 수구역은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노후재질관 교체만 국고보조	정수장 단위 (개별 정수장 단위 또는 2개 이상의 정 수장 통합 추진)
사업 목표	관망정비 공사가 포함된 사업대상 급수 구역 목표유수율 85%(특광역시 92%) 이상	먹는물 수질안전성 확보
사업 내용	- 관망정비 공사 - 누수탐사 및 정비 -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 정수장 개량 공사 - 정수장 재건설 공사 - 정수장 통합재건설 공사 (공사별 시설 운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포함)

- ※ 단, '23년 착수사업 중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착수한 사업 포함
- 주) 1.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사업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 조기 성과달성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사업비 (집행·재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총사업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유수율 85%(특광역시 92%) 미만 급수구역 중 과거 국고수혜지역 등 사업타당성 또는 사업효과가 낮거나 사업비가 과다한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고수혜지역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17년~),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 후속 노후지방상수도 정비사업 타당성 연구용역('23년, 환경부 · K-water)에서 유수율 85%(특·광역시 92%) 미만이었으나 자구적 노력으로 향상된 경우 사업대상지로 고려할 수 있다.
5.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대상지 선정 시 우선순위 정리가 필요할 경우 소요예산대비 편익순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 민원 등 감안 필요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6. 기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대상지 검토 시 기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검토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신규사업 시점에 변경된 여건을 추가 검토하여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전기술검토 요청시 위 검토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7. 기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의 경우,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는 사업내용에서 제외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기술검토 시 요청할 수 있다.

다. 개략사업비 산정

- ① 사업계획서 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행정업무 자료제출 등 사업 추진 및 초기단계 사업관리시 사용할 수 있는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 ② 개략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시설부대경비는 설계비(조사비, 설계·시공일괄입찰발주시 기본계획 수립(설계)비,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비 및 설계보상비 등 포함), 건설사업관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한다.
- ㉠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공사비)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복구(긴급복구 포함), 관망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기타 부대공사(수압조정지 설치, 기타공사, 폐기물처리, 한전 수탁비, 현장기술검토팀 운영, 관망운영, 성과판정관련 비용, 공사후 관망도 보완 및 GIS 연계자료 구축(공공측량성과 심사 포함), 유지관리시스템 운영비(전력비, 통신비 등), 사업효과분석, 유지관리지침서 및 백서 작성, 민원처리를 위한 경비 포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용 등 작성 포함) 등

※ 사업방식 및 사업비 집행방식에 따라 현장기술검토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부대경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㉔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공사비) 정수장 정비, 시설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계측기기 설치, 기타 부대공사(기타공사, 폐기물처리, 종합 시운전, 사업효과분석,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포함) 등
- ③ 설계비, 건설사업관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개략사업비 산정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의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고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출한다. 다만, 별도의 산정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발주계약 시 설계비 및 건설사업관리비 산정은 「건설기술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에 제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사업수행방식 및 사업특성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재정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 ① 기본구상 시 개략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재정계획에는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별 분담비율 및 지방비 재원조달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국고가 보조되지 않는 단위사업과 통합 추진하는 경우, 재원분담계획을 별도 구분하여야 하며 해당 단위사업은 지방비 전액부담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 개략사업비 산정의 ②'를 참조하되 세부사항은 환경부와 협의할 수 있다.
 - ㉔ 국고보조제외 대상
 - (노후 상수관망 정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배수지, 송·배·급수관, 관로부대시설)의 신설·확장·개량, 유지관리 시스템 고도구축(기본구축은 보조), 건축 신축(시스템 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증축 및 공간확보는 보조), 과다한 선도기술 적용, 사업과 무관한 기타공사 등
 - (노후 정수장 정비)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정수시설 및 도·송수관로의 신설·확장·개량, 과다한 선도기술 적용, 사업과 무관한 기타공사 등
- ※ 단, 운영여건상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반영 가능

④ 연차별 재정계획

- ㉠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블록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유수율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망정비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연차별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단계별 사업내용에 따른 예산집행 가능액을 분석한 후 연차별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예산의 불합리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사업(관리)위탁 검토

- 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관망/정수장성능평가,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정비, 관망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복합공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수도분야 전문관리 인력을 전임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사업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성공적인 사업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전문기관, 다른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관망관리대행업 등에 사업(관리)위탁을 검토할 수 있다.

바. 사업추진방식 검토

- ① 사업추진계획, 유사사업 추진현황, 상수도관망 시설현황, 사업관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일괄추진방식, 단계별추진방식 중 시·군 여건에 적합하고 사업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사업추진방식 종류
 - ㉠ (일괄추진방식) 일괄 정비계획수립-일괄 구축사업시행
 - ㉡ (단계별추진방식) 단위과업별 정비계획수립-단위과업별 구축사업시행
- ※ 필요시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

사. 공사발주방식(재정사업) 검토

- ① 사업의 시급성, 사업성과 보증 및 책임한계, 사업 후 사업목표 달성 및 지속적인 사업성과(목표유수율, 먹는물 수질기준) 유지, 법정 우선 구매제품 및 기술 사용, 예산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발주방식을

선정한다.

- ②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방식, 시·군 현황, 공사규모를 고려하여 기술형 입찰방식(설계·시공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 등), 가격형 입찰방식(기타공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설계용역 및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 우선구매 제품 사용 시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아. 운영관리방안 검토

- ① 시·군의 현황 및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적 사업성과 유지,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 구축, 사업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한 공사-운영 연계관리 방안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시·군간 수도사업 통합추진으로 중복기능을 제거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운영관리 원가 및 공사비를 절감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자. 우수제품(기술) 사용(선도기술 적용)

- ①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기술(IoT), 원격검침기술, 누수감지기술, 수압관리기술, 지하매설물 안전관리기술(RF기반의 관로인식체계 등 무선인식 기술) 등 검증된 최신기술이 적용된 우수제품(기술) 또는 혁신제품 등을 지역여건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지속적인 상수도시설 기능유지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수제품(기술)을 적용하는 선도기술 시범블록을 반영하거나 기술 선도형사업의 추진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우수제품(기술)은 사업대상지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지 외 지역 적용시 명확한 적용 목적이 있어야 한다.

차 정보화사업 절차 검토

- ①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시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및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주요내용

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① 사업대상시설

구분	내 용
사업대상시설	- 배수지 및 수압조정지 - 배수관로 - 급수관로(계량기 전까지) - 요금부과대상 계량기 - 가압장 - 유지관리시스템 시설 및 설비 - 송·배수관로 부속시설 및 설비

※ 송수관로, 배수지, 수압조정지 등의 경우 필요시 환경부 협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② 계획 및 설계단계

㉠ 주요내용

구분	내 용
계획 및 설계단계	- 사업의 기본방향 제시 - 기존 자료 및 현황조사 - 관련계획 검토 - 기본계획 규모결정 - 현장조사 및 측정 - 관망도정비 및 GIS 반영계획 수립 -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관망성능평가 - 관망정비계획 수립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사업성과(유수율) 관리계획 수립 - 유지관리계획 수립 - 사업비 산정 - 사업시행계획 수립

주) 유사사업을 기추진한 경우로서 시설현황이 양호한 경우 및 시·군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 과업의 실시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부 과업의 범위 및 수준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 시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향후 수행계획 또는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㉔ 고려사항

-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조사 및 관망도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성과(유수율)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 급수구역 목표유수율은 85%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유수율, 지자체 규모별 사업관리수준, 지형, 면적, 관로 및 수용가 현황, 투자비 대비 누수 손실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목표유수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시·군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 급수구역 목표유수율 조정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사전기술검토 신청시 목표유수율 조정 신청내용 및 기술자문위원회 결과를 포함하여 환경부에 검토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무단수(또는 단수최소화) 및 비상시 급수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지점 복구뿐만 아니라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정비가 적체된 불량관(노후관) 개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수관망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합리적 노후시설 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정보 관리를 계획하여야 한다.
- 시설현황조사 및 공사를 통해 취득한 상수도관망 정보(GIS연계자료)를 활용하여 공사 단계에서 상수도관망 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의 관망도 관리 기능 구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지관리시스템은 향후 자산관리에 연계 운영 가능토록 구축하여야 한다
-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및 대민 정보 공개(전광판, 어플리케이션), 재염소 투입설비 설치, 관로세척(플러싱 등),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등 수질관리 강화방안을 반영하여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복투자방지를 위해 수질자동측정기, 대민 정보 공개, 재염소 투입설비 등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20~'23)에서 반영하도록 한다.

- 사업추진에 있어 적수 등 수질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중점 관리지역 관로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관세척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
- 관망정비 이후에 체계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특히, 누수, 수질, 민원, 사고 등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ICT 기술(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상수관망 계측데이터를 상시 원격모니터링(TM)하고 필요시 분석을 통해 밸브, 펌프 등을 원격제어(TC)하여야 한다.

③ 공사단계

㉠ 주요내용

구분		내 용	
공 사 단 계	블록 시스템 구축	• 경계·제수밸브 신설 및 개량 • 비상관로 및 연계관로 신설 • 가압장 신설 및 개량 • 배수지 신설 및 개량 • 유량계설 및 관리블록 점검구	• 감압밸브설 신설 및 개량 • 수압계설 신설 및 개량 • 이토밸브설 신설 및 개량 • 관세척 설비 및 유지관리 점검구 설치
	누수 탐사 및 정비	• 단계시험을 통한 누수지역 예측 • 사업대상지역 누수탐사 • 누수지점 확인 및 정비	• 누수분석 및 누수복구 자료정리 • 부정사용량 조사 및 분석
	관망 정비	• 다발관 및 잔존관 정비 • 노후재질관 개량 • 통수능 부족관 개량 • 수질이상관 개량	• 기타불량관 개량 • 부적정계량기 정비 • 공공수량 계량기 설치
	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	• 현장제어반 설치 • 현장제어반~유지관리시스템간 통신설비 설치 • 계측데이터를 상시모니터링하고 경보하는 감시시스템 구축 • 유·누수량(유·누수율) 및 야간최소유량에 대해 원단위산출, 추세분석, 비교 통계하는 관리·분석시스템 구축 • 시설물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유지관리시스템 운영센터 구축	

㉡ 고려사항

- 공사시 목표 유수율 달성을 위하여 공정율에 따른 유수율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준공시 목표유수율을 달성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중 효율적 사업성과 달성 과정을 자문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사업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사업성과관리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사업목표달성여부 및 주요사업성과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현대화사업 성과관정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현대화사업 성과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업무편람 및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사업시 블록시스템(블록고립, 블록유량계) 및 유지관리시스템(블록유량감시) 일부를 선구축함으로써 사업기간 중 블록별 유수율 및 누수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공정관리를 위해 PERT/CPM 등의 예정공정도를 작성하여 공정선·후 관계 및 준공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특성상 단수시행이 많으므로 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단수 최소화공법을 충분히 적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지침(입찰안내서, 계약조건 등)에 의거하여 설계보완·변경업무를 실시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의 기술검토를 위한 전담팀 및 유수율 관리를 위한 누수탐사·정비팀을 현장에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고 사용된 공공용수(소화전 사용, 가로수/화단 물주기, 도로청소 등)와 수도사업용수(관말 동파방지 퇴수 등) 및 부정사용(도수 등) 수량은 유수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정비 및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누수복구·관망정비시 획득한 기존관 시편을 토대로 기존관의 매설현황자료(관종, 관경, 매설년도, 매설위치, 불량사유 등)를 정리하고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향후 유지관리 시 전국적 노후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관로 공사 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매설현황자료, GIS 및 관망도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성과유지단계에서 자산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GIS 또는 관망도 보완자료를 활용하여 상수도관망 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하수관로공사 등 도로굴착·포장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상수관망 정비와 일괄시행을 검토하며 공사시기 조정 및 중복물량 정산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
- 사업전후의 취수량·생산량·공급량, 전력량, 생산비 등을 비교하여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④ 성과유지 단계

㉠ 주요내용

구분		내 용	
성과유지단계	유수율 관리	• 누수탐사 및 누수지점 정비 • 수압조정 및 복원누수 저감	• 부적정계량기 정비 • 부정사용에 대한 정비 및 조치
	운영 관리	• 이상감지 및 조치 - 계측데이터 이상 및 사고감지	• 운영모의 - 상수관망의 수리적 거동 예측 • 시설/설비/계측기 정비
	유지 관리 시스템 운영	•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로 시설물 이력관리 - 관망도 전산화 및 GIS 수정·보완 • 기술진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데이터 품질 - 오·결측 데이터 관리	• 데이터분석 - 유수율 분석 - 야간최소유량 분석 - 수질 분석 • 민원관리 - 지역 시각화 및 이력 관리

㉡ 고려사항

-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성과유지를 위하여 유수율관리,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시설물 정보의 최신화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 누수복구·관망정비시 획득한 기존관 시편을 토대로 기존관의 매설현황자료(관종, 관경, 매설년도, 매설위치, 불량사유 등)를 정리하고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향후 유지관리 시 전국적 노후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관로 공사 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매설현황자료, GIS 및 관망도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운영관리 효율화, 유수율 관리 등으로 절감된 비용을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과 유지관리 등 수도사업에 재투자하여 유수율 등 달성된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시스템에 연계된 계측 및 분석된 데이터는 환경부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나.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① 사업대상시설

구분	내 용
사업 대상 시설	• 착수정 • 혼화·응집시설 • 침전시설(침전기 포함) • 여과시설(여과기 포함) • 약품주입 및 소독시설 • 정수지 • 펌프시설 • 계측설비 • 기타 부대시설 • 시설 운영관리시스템 시설 및 설비

※ 노후 정수장 재건설 및 통합재건설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송수시설, 취수시설 등의 정비 및 신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계획 및 설계단계

㉠ 주요내용

구분	내 용
계획 및 설계 단계	• 사업의 기본방향 제시 • 기존 자료 및 현황조사 • 관련계획 검토 • 기본계획 규모결정 • 정수장 성능평가 • 노후 정수장 정비계획 수립 • 시설 운영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시운전 계획수립 • 사업비 산정 • 사업시행계획 수립 • 유지관리계획 수립

※ 유사사업을 기추진한 경우로서 시설현황이 양호한 경우 및 지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 과업의 실시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부 과업의 범위 및 수준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 시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향후 수행계획 또는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고려사항

- 선(先) 유수율 제고 후(後) 정수장 정비사업 추진으로 용수공급량을 절감함으로써 노후정수장 정비용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현재의 원수수질 분석결과 및 장래예측수질을 고려하여 기존 처리공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기존시설의 정비범위 및 정비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단순개량이란 기존 노후된 일반정수처리 공정*을 정비(개량, 재건설, 통합재건설)하여 노후된 시설의 정수능력 등을 회복시키고 향후 운영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비시 고도정수처리공정을 도입하는 것은 제외한다.

* 소독만의 방법, 완속여과, 급속여과(기계식 급속여과 포함) 등을 말함.

< 노후정수장 정비공사 유형 >

구분	내 용
개량	현재의 정수장 부지에서 노후된 설비, 구조물 등의 일부 또는 전체의 시설을 정비
재건설	기존 노후된 정수장 부지 또는 인접한 부지에 정수장을 철거하고 재건설
통합재건설	인근지역의 타 정수장과 통합하여 재건설하는 것이 장래 시설운영 효율화 측면 등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정수장과 노후된 정수장을 통합하여 재건설

- 기존시설을 가동하면서 개량이나 재건설을 추진해야 하므로 인근 정수장으로부터 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하거나 수질적, 수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사 중 용수공급이 불가능하거나, 부분 또는 전면 정비 등으로 수질적, 수량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근부지에 재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존시설의 일부 단위공정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 가동 중인 기존시설의 처리기능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기존시설의 운전관리방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수처리방식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 새로운 정수처리방식으로 정비하는 경우 새로운 기기의 도입이 수반되고 필요 전력량이 증가되므로 수·배전시설의 용량검토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 인근에 위치한 타 정수장과 통합 재건설을 통해 사업비 및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공사단계

㉑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공 사 단 계	정수시설 공사	• 착수시설 신설 및 개량 • 혼화·응집시설 신설 및 개량 • 침전시설 신설 및 개량 • 여과시설(급속,완속,막등) 신설 및 개량 • 고도처리시설(오존, 활성탄 등) 신설 및 개량 • 약품주입 및 소독시설(설비 포함) 신설 및 개량 • 정배수지 신설 및 개량, 확장 ※ 노후정수장 개량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설에 한함. • 배출수처리시설 신설 및 개량 • 정수장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한 시설 등 신설 및 개량
	기계설비 공사	• 각종 기계설비(혼화기, 응집기, 침전설비, 슬러지수집기, 여과설비, 탈수기, 약품주입설비, 소독설비, 펌프 및 밸브 등) 설치 및 개량 • 건축기계설비 등 설치 및 개량
	전기설비 공사	• 전력인입설비 설치 및 개량 • 수변전설비 설치 및 개량 • 배전설비 설치 및 개량 • 동력제어설비 설치 및 개량 • 건축전기설비, 소방설비 등 설치 및 개량 • 소방설비 설치 및 개량
	계측제어 설비공사	• 유량측정 설비(차압식, 전자식, 초음파식, 위어방식 등) 설치 및 개량 • 수위측정 설비 설치 및 개량 • 수질측정 설비(채수설비, 수질측정계기, 수질감시수조, 모니터링 설비 등) 설치 및 개량 • 감시·제어설비 및 현장 제어반 설치 및 개량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공사	• 현장 제어반-시설 운영관리시스템간 통신설비 설치 • 정수시설을 감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시설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시설 운영관리시스템 운영센터 설치

㉒ 고려사항

- 공정관리를 위해 PERT/CPM 등의 예정공정도를 작성하여 공정 선·후 관계 및 준공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 중 기존구조물의 변위, 침하, 손상, 관로의 변형이나 이탈 등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집중호우 시 연약지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배수시설을 설치하거나 가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성과유지 단계

가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성과 유지 단계	운영 관리	• 이상감지 및 조치 - 계측데이터 이상 및 사고감지 • 준공도 관리 • 상수도시설 운영 및 자료·통계관리 • IT기술을 활용한 감시 및 진단 • 원수 및 정수의 수량·수질 분석 • 정수장 운전관리 - 운전관리방법에 대한 메뉴얼화	• 정수장 기술진단 및 대책수립 • 시설/설비/계측기 정비 • 민원관리 - 수질, 단수관련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수장 시설물 이력관리 • 기술진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데이터분석 - 원수 및 정수의 수량·수질 분석 • 데이터 품질 - 오·결측 데이터 관리

나 고려사항

-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성과유지를 위하여 운영 관리 및 유지관리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시설물 정보의 최신화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수장 운영인력의 운영능력 향상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설의 현대화, 운영관리 효율화 등으로 절감된 비용을 노후 상수도시설 개선과 유지관리 등 수도사업에 재투자하여 달성된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기타행정사항

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등

- ① 기본설계(설계·시공일괄입찰인 경우 기본계획)가 확정된 경우에는 「수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시설개량 계획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

- ①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는 국가재정법에 따른다

다. 지침의 적용

- ①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에 국고가 보조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VIII. 수도사업 경영개선

1. 개요

가. 수도사업 경영현황

- ① 지방상수도 재정현황은 낮은 요금현실화율과 높은 원가로 인하여 운영 비용, 원리금상환 등 현상유지 관련 세출만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 ② 이로 인해 노후 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자체예산이 부족하여 일반 회계 및 국고로 부터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정구조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나. 수도사업 경영개선 목표

- ① 지방상수도가 재정적으로 독립하여 자체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 ②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깨끗한 물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 수도사업 경영개선 방안

- ①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의 생산 및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능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과 서비스원가주의에 입각하여 수도요금으로 회수한다.
- ② 운영관리 효율화를 통하여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을 절감한다.
 - 운영인력의 전문화 등을 통해 운영비용 절감
 - 지자체간 통합운영으로 지자체별 중복기능 제거,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운영비용 절감
- ③ 유수율 관리 및 시설물 현대화 등으로 상수도 생산 및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
 - 유수율관리를 통한 상수도 수량관리
 - 시설물 현대화 등에 따른 생산비용의 절감

④ 운영관리 효율화 및 우수율 관리 등으로 절감된 비용은 수도시설 관리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 절감된 비용을 수도사업에 재투자하여 노후 상수도시설을 개선
- 지속적인 우수율 유지관리를 통해 일정 우수율 유지

2.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평가

가. 체계적인 수도사업 경영개선 목표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국고 보조대상 지자체의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한다.

나.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사업 경영의지 평가(지방재정 평가지표 배점 (2년차도 국고보조율))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지역균형발전 (50)	인구감소지역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해당시	25
	성장촉진지역	• 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비에서 지정한 성장촉진지역 해당 시	25
수도사업 경영의지 (50)	지방비 확보	• 당해연도 지방비 예산 대비 확보한 지방비 비중	25
	사업추진의지	• 수도정비 기본계획 현실화(변경,부분검토 등), 상수관망 기술진단 시행,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기타 중점관리지역 해제 및 노후재질관 교체계획 수립 등	25

- 수도사업 경영개선 평가항목 배점(3년차도 이후 국고보조율)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자료제출 적정성 (10)	경영실적 보고서	•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평가	5
	총괄원가 계산서	• 총괄원가 계산서 제출평가(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별도평가를 통해 배점 부여)	5
수도요금 현실화 (30)	수도요금 인상액	• 수도요금인상 실적 평가	10
	수도요금 인상계획의 구체성	• 지방의회 승인 계획 및 실적 평가	10
	원가절감	• 원가절감 실적 평가	10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운영관리 효율화 (50)	우수제품 사용실적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자재 중 법정 우선구매제품 사용 실적 평가	5	
	광역자치단체 노력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업비 중 광역자치단체 분담률 등의 실적 평가	5	
	노후시설 조기정비노력	• 사업비 조기집행, 전년도 집행을 등 조속한 정비 노 력도 평가	10	
	사후유지관리 / 사업추진의지	• 유지관리시스템 운영수준		10
		1. 기존 정비사업 추진지역	• 우수율 성과유지 노력	10
			• 절감된 운영비 재투자	10
		2. 최초 정비사업 추진지역	• 과거우수율 제고노력	10
			• 사업추진의지	10
기타 (10)	정부정책 추진의지	•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 및 기타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 평가	5	
	지역균형발전	• 인구감소, 성장축진 선정지역 평가	5	

주) 수도사업 경영개선실적 평가기준 [붙임 2] 참조

다. 지자체간 통합하여 사업 추진(공사, 운영관리)하거나 환경부의
기술선도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할 경우에는 추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

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국고보조는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0~20% 국고보조율을 차등하여
추가지원 한다.

※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하여 상위 20%는 인센티브 20%, 중위
30%는 인센티브 10%를 추가 보조한다.(하위 50%는 추가보조 없음)

IX. 용어정의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이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 상수도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고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노후 상수관망 정비'란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녹물발생 등을 방지하고, 누수저감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으로 가뭄 등에 선제적 대응할 뿐만 아니라,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관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도사업을 선순환 구조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노후 정수장 정비'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정수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정수장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정수장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수도사업을 선순환 구조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선순환 구조 구축'이란 지방상수도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량 증가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상수도 재정악화, 수도사업자 재정투자 여력 감소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개선(불량관(노후관) 개량), 운영관리체계 도입(블록·유지관리 시스템), 자산관리체계 도입, 유지관리 전문성 확보, 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도사업자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수도사업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 '기술선도형사업'이란 환경부가 추천하는 우수자재(기술)로 관급자재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기술선도형 사업으로 추진여부를 확정한다.
- '관망정비'란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 관망성능평가, 블록구축 및 운영을 통한 수량, 수압 및 수질 등을 고려하여 관로 및 부대설비·시스템의 개량, 교체 및 신설 대상을 선정하여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 ‘블록시스템’이란 배급수관망의 수량, 수질, 수압, 시설관리 및 계획 등 관망의 효율적 운영관리의 용이성 제고와 수질사고, 자연재해 등의 긴급 상황 시 단수시간 최소화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망을 계층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설체계를 말한다.
 - ‘대블록’이란 정수장의 송수계통 급수구역으로 도로(폭 25m이상), 하천 및 복개천, 철도 등이 경계인 대규모 블록이다.
 - ‘중블록’이란 가압장 및 배수지 급수구역으로 도로(폭 8m이상), 하천 및 복개천, 배수본관, 행정구역 등을 경계로 블록을 구분하며, 급수전 1,500~5,000전 규모로 소블록 5~10개를 포함하는 중규모 블록이다.
 - ‘소블록’이란 도로(폭 8m이하), 철도, 하천 및 복개천, 배수본관, 행정구역, 공원, 공단, 대단위 아파트 등을 경계로 구분하고, 급수전 500~1,500전 규모인 소규모 블록이다.
- ‘유지관리시스템’이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를 위해 배수지 및 블록별 계측, 모니터링, 분석, 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전산설비를 말한다.
- ‘사업대상 급수구역’이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내용 중 관망정비 공사, 누수탐사 및 정비 등을 시행한 급수구역을 말하며, 정수장 또는 배수지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 ‘사업대상 급수구역 목표유수율’이란 사업성과보증지표로 활용되는 유수율을 말하며, ‘사업대상 급수구역’의 전체 공급량(합산량) 대비 전체 유수수량(합산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노후재질관 교체, 중점관리지역해제만을 수행한 급수구역은 사업대상 급수구역 목표 유수율 산정 시 제외한다.
 - 사업대상 급수구역 목표유수율 산정 시 ‘사업대상 급수구역’이 정수장 공급구역의 일부구역일 경우에는 배수량(=배수지 유출유량 또는 배수지를 미운영하는 경우 해당 구역 유입유량의 합계)이 공급수량이 되므로 ‘유수수량과 배수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 다만, 정수장 또는 배수지 급수구역의 일부가 '사업대상 급수구역'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 급수구역'이 아닌 구역의 유입유량이 '사업대상 급수구역'의 배수관망을 거쳐 공급되는 경우에는 유수율 산정 시 해당 수량을 유수수량에 가산하고, 배수관망을 거치지 않고 송수관로에서 분기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유수율 산정 시 해당 수량을 공급량에서 제외한다.
- '자산관리'란 시설물 자산의 전 생애에 걸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준을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결합하여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하는 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 '관망성능평가'란 효율적인 유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관망정비의 일환으로 누수현황, 민원현황, 블록별 유수율 등 기초자료 분석, 관망진단 및 평가를 통해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도미터 교체계획 등 합리적인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정수장성능평가'란 정수처리 공정분석 및 공정특성을 감안한 평가 후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수처리시설의 안정화 및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공공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 '기술형 입찰방식'이란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과 같이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 'PERT/CPM'이란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각 분야를 보다 세분화된 작업으로 분할하여 작업의 순서, 소요기간, 기타 제반 사항들을 네트워크 형태로 표시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주공정(임계경로, Critical Path) 및 여유공정을 산출하여 중점관리 대상작업을 명확히 하고, 전체적인 작업 일정을 세분화함으로써 공기지연의 사전예방, 공기 단축 등의 효율적인 일정관리를 도모하는 기법을 말한다.

- ‘사업위탁’이란 설계·공사 발주, 설계관리, 공사관리 등의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모두를 공공전문기관, 다른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사업관리위탁’이란 설계관리, 공사관리 등의 업무전체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생산량’이란 정수지 유출부에 설치된 유량계를 통과하여 유출되는 수량을 말한다.
- ‘배수량’이란 배수지 유출부에 설치된 유량계를 통과하여 유출되는 수량(배수지를 미운영하는 경우 해당 급수구역으로 유입되는 유량의 총합)을 말한다.
- ‘노후재질관’이란 관자재 재질이 노후하여 상수도관으로 부적합한 관 및 아연도강관(GSP), 회주철관(CIP), 플라스틱관(PVC, ‘20년이상 경과된 관) 등이 포함된다.

붙임1. 사업계획서 등 서식자료

■ 사업계획서 양식

[양식 1] 사업계획서

[첨부 1-1] 상수도 관리현황

[첨부 1-2]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1-3]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1-4] 사업비 산출내역

[양식 2]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신청서

[첨부 2-1]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 세부내용

■ 예산신청 양식(시·군/시·도)

[양식 3]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서

[양식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신청서

[첨부 5-1]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

[양식 5] 사업추진계획서

[양식 6]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 사업 수행상황, 실적 및 사후관리 보고양식

[양식 7] 사업수행상황보고서

[양식 8] 사업실적보고서(완료·폐지·종료)

[양식 9] 사후관리 계획서

[양식 10] 사후관리 실적보고서

[양식 10-1] 사후관리 실적보고서 (목표 유수율 미확보시)

붙임2. 수도사업 경영개선 계획/실적 평가기준 및 보고양식

■ 수도사업 경영개선 계획 및 실적 평가기준

■ 수도사업 경영개선 계획 및 실적 보고양식

[양식 11] 수도사업 경영개선 계획보고서

[양식 12]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보고서

붙임1.

사업계획서 등 서식자료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시·군		사업구분	노후 상수관망(정수장) 정비사업		
사업명					
사업목표	※ 목표유수율, 정수장정비목표, 재정건정성 제고 계획 등 기재				
현황	○ 총인구 00명, 급수인구 00명 ○ 정수장 0개소, 총 시설용량 000m ³ /일 ○ 송수관로:L= 00km, 배수관로:L= 00km, 급수관로:L= 00km ○ 유수율 00%, 누수율 00%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백만원, 지방비 : 백만원) -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사업위치	노후상수관망 : 급수구역(읍, 면, 동) 노후정수장 : 정수장 위치 표기(도로명 주소)				
주요사업내용	○ 관망 정비 L= 00km ○ 블록시스템(소블록)구축 0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 정수장 개량 Q=000m ³ /일				
사업준비현황	※ 기술진단 완료, 블록구축 용역 수행중 등 기재				
사업관리방식	※ 시·군 자체수행, 공공전문기관 위탁, 다른 광역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위탁 등				
사업추진방식	※ 일괄추진방식, 단계별 추진방식 등				
공사발주방식	※ 기술형 입찰방식(설계·시공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등), 가격형 입찰(기타공사) 등				
운영관리방식	※ 공사 - 운영 분리관리, 공사 - 운영 연계관리 등				
수도요금현실화계획	○ 착 공(00년)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원/m ³) ○ 현 재(00년)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원/m ³) ○ 준 공(00년)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원/m ³)				
사업담당	직책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과장				
	담당자				
	실무자				

2. 세부사업계획

- 사업대상 급수구역
 - 급수구역 인구, 보급률, 수도요금, 수도요금 현실화율 등 기초현황
- 목표유수율
 - 유수율 현황(과거 3년간 시·군 전체, 급수구역별), 연차별 목표유수율 계획
- 관망정비
 - 관로 현황(관용도별, 관종별, 관경별, 매설년도별 등)
 - 민원관리 현황, 수용가관리 현황
 - 관망진단 자료 및 관로정비 실적
 - 노후 상수관로 정비계획(급수구역별, 정비내용별 사업물량 등)
- 블록시스템 구축(대, 중, 소 블록으로 구분하여 작성)
 -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비교하여 블록구축계획 작성
 - 블록별 기본현황(정수장-배수지계통 급수인구, 급수량, 관로연장 등)
 - 블록별 시설물계획(가압장, 감압밸브, 블록유량계, 비상관로 등)
- 누수탐사 및 정비
 - 단계시험 결과 분석 자료,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 단계시험 결과 분석 자료, 야간최소유량, 민원관리 현황 등을 고려한 누수탐사 및 정비
 - 유수율, 누수율, 야간최소유량 등을 고려한 부정사용량 조사 및 분석
- 유지관리시스템 및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 현황(시스템 구축현황, 전담기구 및 인력 운영 현황)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계획
 - 전산시스템 구축계획
- 정수장 정비
 - 기존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 개량, 재건설, 통합재건설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 세부 공정계획, 공법계획, 기자재 및 시설물 계획
 - ※ 각 항목은 기존현황, 사업물량(사업대상), 사업비, 주요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군 현황에 맞게 세부내용을 가감할 수 있음

3. 연차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A)	D-1년	D년	D+1년	D+2년	D+3년	D+4년
계								
국 고	소계							
	보조금							
	융자금							
지 방 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 D-1년 : 신규사업 예산신청년도, D년 : 국고보조 1차년도, ……

4. 사업 타당성 검토

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상수관로 녹물발생, 정수처리공정 기능저하로 인한 수질 안전성
- 가뭄시 물손실로 인한 용수부족 등의 수량 안정성
- 낮은 유수율, 정수장 및 상수관로 노후 수준, 사고·단수로 인한 긴급 복구 현황
- 공법 및 공정계획, 사업 효과(B/C) 등

② 사업목표 달성 및 지속적인 사업성과유지 가능여부

- 사업관리방식, 사업추진방식, 공사발주방식, 운영관리방식 선정의 적정성

③ 시·군 사업 의지

- 현황파악,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검토 및 현실화, 관망조사, 재정 및 운영계획, 정책부합성 등
- 상수관망 기술진단 및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의 구체성 확보여부

5. 지방비 확보 여부 : (확보 또는 미확보)

※ 확보시 예산명세서 사본 첨부, 미확보시 향후 확보방법 및 일정 기술

6. 사업 기대효과

○

○

[첨부 1-1] 상수도 관리현황

구 분		내 용							
지자체명									
급수현황	총인구	급수인구	급수 보급률 (%)	유수율 (%)	누수율 (%)	유효수율 (%)	수도요금 (원/㎥)	수도요금 현실화율 (%)	
정수장현황 (㎥/일)	정수장명	시설용량	설치년도	여과방식	기술진단 년도	유수율 (%)	누수율 (%)	정비년도 (최신)	
상수관로현황 (km)	합계		도수관로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
20년이상 상수관로(km)	합계		도수관로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
관망기술진단		기술진단 종류						시행년도	00년
상수관망 관리실태	구분	관망도 전산화		관망GIS	블록고립 완료	블록유량 계측		유지관리 시스템	
	여부								
	시행년도								
	구축비율(%)								
	중블록수	-		-					
정수장 정비계획	대상정수장		정비사유		정비일정		계획사업비 (백만원)		
상수관망 정비현황	정비대상연장(km)		정비연장(km)		집행사업비 (백만원)		소요재원 조달방법		
상수관망 정비계획	정비계획연장(km)			정비일정			계획사업비(백만원)		
00년 정비비 확보현황	사용용도			확보금액(백만원)			재원조달방안		
	정수장								
	상수관망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①사업명	△△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②사업기간	사업기간(년)		착수년도		준공년도					
		설계		공사		성과검증					
	③소요예산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기타		
사업 추진 계획	사업 계획	④현황, 목표	정수장/ 배수지	유수율(%)		블록구축	정비블록	상수관로	정비계획		
			(명칭)	현황	목표	(개수)	(개수)	(연장, km)	(연장, km)		
		⑤추진현황	추진용역1								
			과업기간	계약금액(백만원)			수행기관				
			추진용역2								
			과업기간	계약금액(백만원)			수행기관				
	⑥예산확보현황	합계(백만원)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기타		
	⑦타당성조사 반영여부	(반영여부 확인 불가시 비워둘 것)									
	사업 추진 방식	⑧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방식	공사발주	☐ 설계시공일괄(설계·시공일괄입찰) ☐ 기술제안 ☐ 대안 ☐ 기타공사 ☐ 기타()							
			사업관리	☐ 전문기관 위탁() ☐ 건설사업관리 용역() ☐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 ☐ 기타()							
		⑨목표달성 방안									
		⑩추진일정	설계(년)	공사(년)			운영관리				
	⑪서비스관리 계획수립										
	운영 계획	⑫운영방식	☐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 ☐ 전문기관 위탁() ☐ 건설사업관리용역() ☐ 기타()								
		⑬연간운영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전력비	누수탐사· 복구	시설 개선비	채무상환			
		⑭운영비 확보 방안									
	재정 건전성 제고계획	⑮수도요금 현실화계획	구분	현재	D	D+1	D+2	D+3	D+4		
			수도요금								
현실화율											
00년이후											
⑯부채감축 계획(억원)		년도	현재	D	D+1	D+2	D+3	D+4			
	부채액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⑰담당과장										
	⑱담 당 자										
	⑲실 무 자										
년 월 일 지 방 자 치 단 체 장 (인)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①사업명	△ △시(군) OO정수장 정비사업							
	②사업기간	사업기간(년)		착수년도				준공년도	
		설계		공사			시운전		
	③소요예산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기타
사업 추진 계획	사업 계획	④현황, 목표	정수장명	시설용량(m³/일)		정수처리과정			
				현재	정비	현재	정비		
		⑤추진현황	추진용역1						
			과업기간		계약금액(백만원)		수행기관		
	추진용역2								
	과업기간		계약금액(백만원)		수행기관				
	⑥예산확보현황	합계 (백만원)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기타			
	⑦타당성조사 반영여부	(반영여부 확인 불가시 비워둘 것)							
	⑧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방식	공사발주	☐ 설계시공일괄(설계·시공일괄입찰) ☐ 기술제안 ☐ 대안 ☐ 기타공사 ☐ 기타()						
		사업관리	☐ 전문기관 위탁() ☐ 건설사업관리 용역() ☐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 ☐ 기타()						
	운영 계획	⑨운영방식							
		⑩연간운영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수선유지비	채무상환	
	⑪운영비 확보 방안								
재정 건전성 제고계획	⑫수도요금 현실화계획	구분	현재	D	D+1	D+2	D+3	D+4	
		수도요금							
		현실화율							
		00년이후							
	⑬부채감축 계획(억원)	년도	현재	D	D+1	D+2	D+3	D+4	
부채액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⑭담당과장								
	⑮담당자								
	⑯실무자								
년 월 일 지 방 자 치 단 체 장 (인)									

1. 사업비 총괄 집계표

구 분	수량	금액(백만원)	비 고 (수량작성예시)
총사업비 계			
1. 공사비			
○ 노후 상수관망			
•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대블록 00 개소
• 누수탐사 및 정비			누수탐사 00km 누수복구 00건
• 관망정비 공사			배수관 00km 급수관 00km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대블록 00 개소
• 기타 공사			대블록 00 개소
○ 노후 정수장			
• 정수장 00단위시설			00 개소
2. 보상비 (용지보상비등)			식
3. 시설부대경비			식
3-1. 설계비			식
3-2. 건설사업관리비			식
3-3. 시설부대비			식

※ 공사비는 노후 상수관망과 노후 정수장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공사비는 공종별로 단위내용을 세분하여 작성한다.

※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는 사업단위(시·군 또는 정수장 단위)로 작성한다.

※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는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집계표

가. 노후 상수관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00대블록A(정수장계통)								비고 (수량작성예시)
			계		00중블록A1 (배수지계통)		00중블록A2 (배수지계통)				
	수 량	공사비			수 량	공사비	수 량	공사비	수 량	공사비	
1. 공사비											
•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중블록 0개소	
• 누수탐사 및 정비										누수탐사 00km 누수복구 00건	
• 관망정비 공사										배수관 00km 급수관 00km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중블록 0개소	
• 기타 공사										중블록 0개소	

<표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00대블록B(정수장계통)						00대블록 추가		비고 (수량작성예시)
	계		00중블록B1 (배수지계통)		00중블록B2 (배수지계통)		계		
	수 량	공사비	수 량	공사비	수 량	공사비	수 량	공사비	
1. 공사비									
•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중블록 0개소
• 누수탐사 및 정비									누수탐사 00km 누수복구 00건
• 관망정비 공사									배수관 00km 급수관 00km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중블록 0개소
• 기타 공사									중블록 0개소

나. 노후 정수장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0정수장1	00정수장2	추가...	비고
1. 공사비					
• 토목공사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기타공사					

3.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가. 노후 상수관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00중블록(00정수장 00배수지 계통)							
공사비	총계 :							
블록 시스템 구축 공사	소계 :							
	배수관신설		급수관신설		유량계신설		수압계신설	
	km	공사비	km	공사비	개소	공사비	개소	공사비
	밸브 및 밸브실 신설		유량계, 수압계신설		감압밸브 신설		가압장 신설/정비	
	개소	공사비	개소	공사비	개소	공사비	개소	공사비
누수 탐색 및 정비	소계 :							
	누수탐사		누수복구		(기타1)		(기타2)	
	km	공사비	건	공사비	(단위)	공사비	(단위)	공사비
관망 정비 공사	소계 :							
	배수관 교체 및 갱생		급수관 교체		밸브정비		계량기/보호통 교체	
	km	공사비	km	공사비	개소	공사비	개소	공사비
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 공사	소계 :							
	기본 구축		블록별 구축		(기타1)		(기타2)	
	식	공사비	개소	공사비	(단위)	공사비	(단위)	공사비
기타 공사	소계 :							
	비상연결관		점검구 신설		수압조정지 설치		(기타)	
	km	공사비	개소	공사비	(단위)	공사비	(단위)	공사비

※ 배수지 급수구역 단위로 자료를 작성하되, 불가한 경우, 정수장 단위 또는 지자체 단위로 자료 작성(정수장 단위 또는 지자체 단위로 작성한 경우, 환경부 기준으로 확대적용 예정)한다.

※ 배수관 교체 및 갱생, 급수관 교체물량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노후 정수장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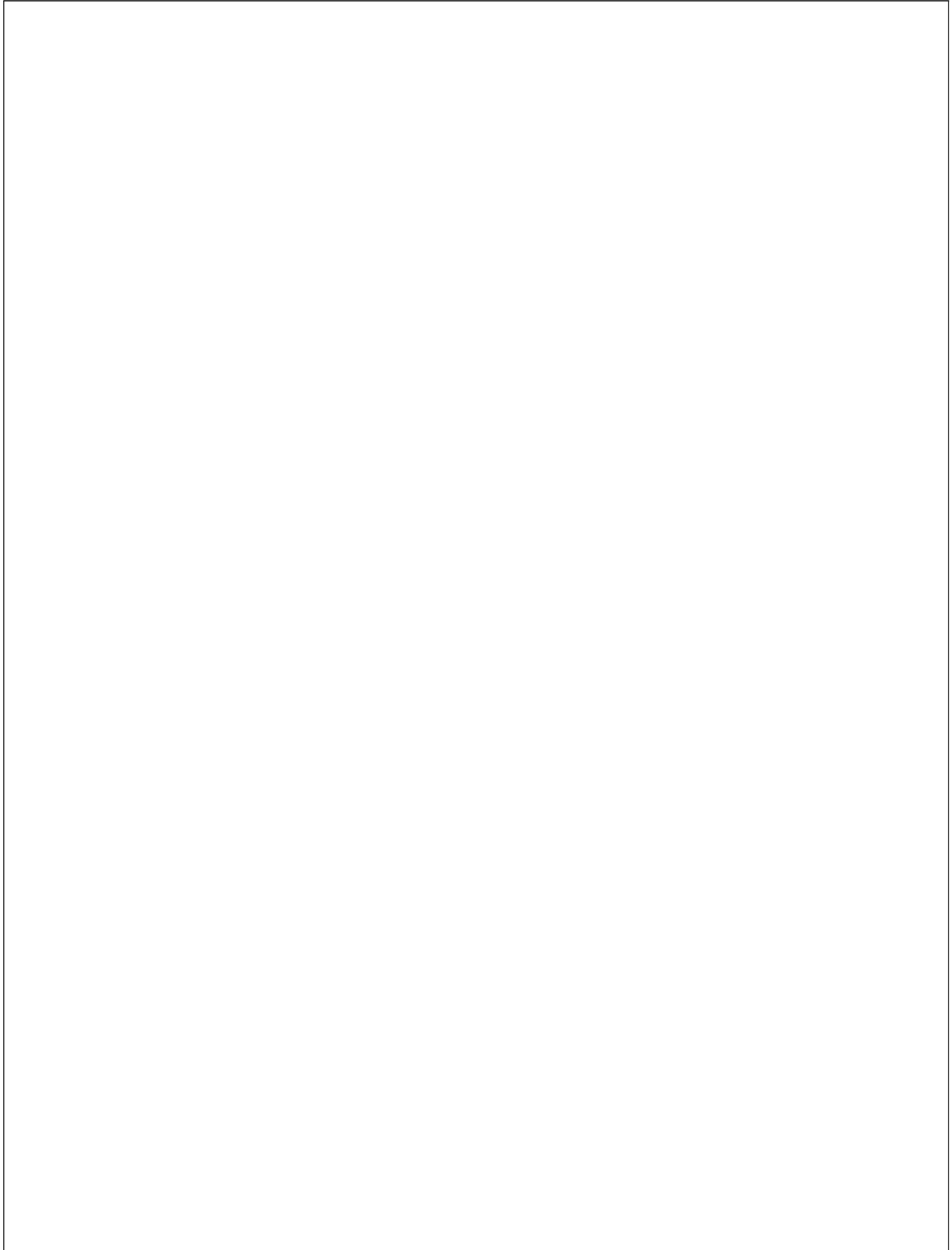
구 분	00정수장			
	공사방식 분류	용량		공사 주요내용
		m³/일		
공사비	총계 :			
토 목 공 사	소계 :			
	착수정/혼화지	응집지/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송수펌프실	배출수 처리시설	부대시설	(기타시설)
기 계 공 사	소계 :			
	착수정/혼화지	응집지/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송수펌프실	배출수 처리시설	부대시설	(기타시설)
전 기 계 공 사	소계 :			
	착수정/혼화지	응집지/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송수펌프실	배출수 처리시설	부대시설	운영관리시스템
기 타 공 사	소계 :			
	건축공사	조경공사	(기타공사1)	(기타공사2)

※ 개별 정수장 단위로 작성한다.

※ 공사방식 분류는 부분·전면개량, 재건설, 통합건설로 구분한다.

[첨부 1-5] 사업 계획평면도 등 참고자료

- (관망) 용수공급체계도, 관망정비 급수구역 현황도 등
- (정수장) 정수장 위치도, 처리계통도, 정비계획 평면도(사업 전·후) 등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신청서

1. 사업개요

시·군		사업구분		노후 상수관망(정수장) 정비사업		
사 업 명						
사업목표 ※ 목표유수율, 정수장정비목표, 재정건정성 제고 계획 등 기재						
현 황		○ 총인구 00명, 급수인구 00명 ○ 정수장 0개소, 총 시설용량 000m ³ /일 ○ 송수관로:L= 00km, 배수관로:L= 00km, 급수관로:L= 00km ○ 유수율 00%, 누수율 00%				
사업기간		당 초		변 경		
총사업비		당 초	백만원(국비, 지방비)	변 경	백만원(국비, 지방비)	
※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구분하여 기재						
사업위치		노후상수관망 : 급수구역(읍, 면, 동) 노후정수장 : 정수장 위치 표기(도로명 주소)				
주요 사업 내용	당 초	○ 관망 정비 L= 00km ○ 블록시스템(소블록)구축 0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 정수장 개량 Q=000m ³ /일				
	변 경	○ 관망 정비 L= 00km ○ 블록시스템(소블록)구축 0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 정수장 개량 Q=000m ³ /일				
사업관리방식		당 초		변 경		
사업추진방식		당 초		변 경		
공사발주방식		당 초		변 경		
운영관리방식		당 초		변 경		
수도요금 현실화계획		○ 착 공(00년)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원/m ³) ○ 현 재(00년)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원/m ³) ○ 준 공(00년)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원/m ³)				
사업담당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2. 사업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 추진경위

- yyyy. mm. dd :

- yyyy. mm. dd :

- yyyy. mm. dd :

- yyyy. mm. dd :

- yyyy. mm. dd :

3. 사업추진 현황

3-1. 재원배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가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기타
		소계	보조금	융자금	소계	시·도비	시·군비		
금 액									
지원비율 (%)									

3-2. 사업진행 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행기간		시행주체	예산액	용역 수행	용역결과 총사업비
	착수	완료				
◦ 타당성조사	yy.mm.dd	yy.mm.dd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 사						

3-3. 계약체결 현황

○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공정별)	예산상 공사비	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 변경 회수	최종물가 조정일
		계약일	예정 가격	계약액	계약일	계약액		
◦ 기계약분								
-								
-								
◦ 미계약분								
-								
-								

○ 보상비(용지보상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 고
		일자	계약액 (B)		
◦ 보상비		yy.mm.dd			

○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건설사업관리비, 시설부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 고
		일자	계약액(B)		
◦ 설계비		yy.mm.dd			
◦ 건설사업관리비		yy.mm.dd			
◦ 시설부대비		yy.mm.dd			
합 계		yy.mm.dd			

4. 사업계획 변경신청

4-1. 사업기간 변경요구

현행 : 백만원		변경요구 : 백만원	
착수	완료	착수	완료
yyyy.mm	yyyy.mm	yyyy.mm	yyyy.mm

4-2. 사업계획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변경요구(B)	증감		변경내역
			B-A	%	
총사업비 계					
1. 공사비					
2. 보상비(용지보상비등)					
3. 시설부대경비					
3-1. 설계비					
3-2. 건설사업관리비					
3-3. 시설부대비					

4-3. 사업계획 변경요구 내역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변 경 요 구	조 정	비 고
총사업비 계				
1. 공사비				
○ 노후상수관망				
•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 누수탐사 및 정비				
• 관망정비 공사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 기타공사				
• 물가변동				
○ 노후 정수장				
• 정수장 00단위시설				
• 물가변동				
2. 보상비(용지보상비등)				
• 물가변동				
3. 시설부대경비				
• 물가변동				
3-1. 설계비				
• 물가변동				
3-2. 건설사업관리비				
• 물가변동				
3-3. 시설부대비				
• 물가변동				

※ 공사비는 공종별로 단위내용을 세분하여 작성

※ 공사비는 노후 상수관망과 노후 정수장을 구분하여 내역 작성

※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금액 산출 근거자료를 별도 첨부

※ 증빙서류 첨부

- 도급(토목, 기계, 전기, 건축, 조경 등 내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서 등 첨부), 관급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서 사본 및 용지매입서 사본 등

5. 총사업비 변경신청

※ 총사업비 변경없이 사업계획만 변경시 미작성

5-1. 총사업비 변경요구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A)	변경 요구(B)	증 감		비 고
				(B-A)	%	
총사업비						
◦ 국 고	소계					
	보조금					
	융자금					
◦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 원인자부담금						
◦ 기타						

5-2. 투자실적 및 향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Y-1까지		Y		Y+1	Y+2년
		현행	변경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예산요구	이후
총사업비 계									
1. 공사비									
◦ 세부구분									
◦ 세부구분									
2. 보상비									
3. 시설부대경비									
3-1. 설계비									
3-2. 건설사업관리비									
3-3. 시설부대비									
국고	소계								
	보조금								
	융자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 Y-1 : 예산신청 전년도, Y : 예산신청년도(예산을 신청하는 년도), ……

5-3. 총사업비 변경연혁(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최초 (yy.mm.dd)									
1차 조정 (yy.mm.dd)			소계						
			*설계변경						
			*설계변경						
2차 조정 (yy.mm.dd)			소계						
			*설계변경						
			*설계변경						
3차 조정 (yy.mm.dd)			소계						
			*설계변경						
			*설계변경						

※ 사업진행단계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중으로 구분하고 최초 및 각 단계의 조정액은 환경부가 승인한 금액 기입

5-4.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증액 사유별로 책임소재와 제재조치 실적 및 계획을 기술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별도 참고자료에 첨부)

[첨부 2-1]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 세부내용

1. 사업계획 변경요구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최초규모		현행(A)		변경요구(B)		증감내역 (B-A)	변경사유 (상세히 기재)
		계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	○								
2	○								
3	○								
4	○								
5	○								
6	○								

※ 변경내역은 사업별로 변경물량을 중심으로 기재

2.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사유

구 분	사업내용 변경사유	사업계획 미변경시 예상되는 문제점
1		
2		
3		
4		
5		
6		

※ 사업계획 변경요구 세부내역에 따라 순번대로 작성

[사업계획(총사업비) 변경 세부내용]

① ○○○ 설치 및 변경(각 공종별로 작성)

구 분		당 초	변경신청
현 황		○ ○	
변경 사유		○ ○	
변경 내용	물량	○ ○	○ ○
	내역	○ ○	○ ○
	도면		

[별 첨] 필요시 추가도면, 사진, 현황설명도 등

※ 변경내역은 사업별로 변경물량을 중심으로 기재

예산신청 양식

[양식 3]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서

00년도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서						
신 청 자	기 관 명		성 명			
사업추진 부 서 (책임자)	소 속(국/과)		전화(FAX)			
	직·성명		e-mail			
보 조 사 업 명		△△군(시) 노후 상수관망(OO정수장) 정비사업				
사 업 목 표		※ 목표유수율, 정수장정비목표, 재정건정성 제고 계획 등 기재				
사업규모	사업내용	○ 관망 정비 L= 00km ○ 블록시스템(소블록)구축 0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 정수장 개량 Q=000m ³ /일		사업구간 (위 치)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 일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금액 (천원)	구 분	합 계	기지원액	금회신청액	향후신청	
	합 계					
	국 비	소계				
		보조금				
		융자금				
	지 방 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내용 반영) 2. 사업추진계획서 1부 3. 기타 사업설명에 필요한 참고자료						

※ 기본적인 양식은 당해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름

I. 예산신청 총괄현황

세부(내역)사업별	Y년 예산	Y+1년예산요구					비고
		세부단위 사업수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소관합계							
○ 노후상수도정비							
- 노후 상수관망							
- 노후 장수장							

※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개소수 등 기재

80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

Ⅱ. 세부(내역)사업별 예산 설명자료

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단위 : 백만원)

시·군명	Y년예산	Y+1년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 △△△도						
· △△시						
· △△군						
○ △△△도						
· △△시						
· △△군						
· △△군						

※ 비고란에는 단위사업별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나.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단위 : 백만원)

시·군명	Y년예산	Y+1년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 △△△도						
· △△시						
· △△군						
○ △△△도						
· △△시						
· △△군						
· △△군						

※ 비고란에는 단위사업별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Ⅲ. 세부사업별 예산 설명자료

사업명 : 노후 상수관망/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시·도)
(사업대상지별로 상수관망과 정수장을 구분하여 작성)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Y-1년 결산	Y년예산 (A)	Y+1년 예산(안) 신청(B)	증(△)감	
				(B-A)	%
계					
▪ △△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계속)					
▪ △△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신규)					
▪ △△시 노후 OO정수장 정비사업(신규)					

※ 담당자 : ☎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 기술

1. 예산신청 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¹⁾	사업 기간	총사업비 ²⁾	사업규모 ³⁾	지원조건 ⁴⁾	시행 주체
▪ △△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계속)	D~D+4 년	000억원 (00년까지 예산액)	○ 관망 정비 L= 00km ○ 블록시스템(소블록)구축 0 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국고보조 (국고 00% 지방 00%)	시·군
▪ △△군 노후 OO정수장 정비사업(신규)	D~D+2 년	000억원 (00년까지 예산액)	○ 정수장 개량 Q=000m ³ /일	국고보조 (국고 00% 지방 00%)	

- 1)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 2)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 3)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 4)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방자치단체 보조, 출연(출자), 용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용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지역균형발전과 연계성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연계

- (△△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 (△△시 노후 OO정수장 정비사업)

2. 00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km, m³/일, 백만원)

내역사업명	Y예산		Y+1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 △△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계속)					• (계속) 00(부터)~00(까지) 00km, △△백만원
▪ △△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신규)					• (신규) 00(부터)~00(까지) 00km, △△백만원
▪ △△시 노후 OO정수장 정비사업 (계속)					• (신규) △△백만원
▪ △△시 노후 OO정수장 정비사업 (신규)					• (신규) △△백만원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Y년 까지	Y+1년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Y+2	Y+3	Y+4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64 32 32 -	20 10 10 -	20 10 10 -	10 5 5 -	10 5 5 -	4 2 2 -
▪ △△군 노후 OO정수장 정비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시 노후 OO정수장 정비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Y : 예산신청년도(예산을 신청하는 년도)

□ Y+1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Y+1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계					
▪					
▪					

※ 부지확보 : 부지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투융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Y-1년예산				Y년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 △△시 노후 OO정수장 정비사업							

※ Y-1예산현액 : Y-1당초예산 + 전년도(Y-2년) 이월금 + 이·전용액

※ Y 예산현액 : Y당초예산 + 전년도(Y-1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Y년 집행전망
계		
▪ ▪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첨부 5-1]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시·군 및 시·도 작성)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 단위로 작성)

(단위 : km, 백만원, %)

내역사업명	Y년도				Y+1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군(계속) △△군(계속) △△군(신규) △△군(완료)	10	6	3	3	7	4	2	2	△1	△33.3

(단위 : m³/일, 백만원, %)

내역사업명	Y년도				Y+1년도				증 감	
	시설 용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시설 용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②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군 ○○정수장(신규) △△군 ○○정수장(신규)										

※ Y : 예산신청년도

참고 2

내역사업 투자계획 (시·군 단위로 작성)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 사업비	Y년 까지	Y+1년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Y+2	Y+3	Y+4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소계	64	20	20	10	10	4
	국비	32	10	10	5	5	2
	지방비	32	10	10	5	5	2
	기타	-	-	-	-	-	-
▪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군 OO정수장(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군 OO정수장(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Y : 예산신청년도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 단위로 작성)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Y-1예산 (전년도)				Y예산 (당해년도)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 △△군 (계속)							
▪ △△군 (계속)							
②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 △△군 OO정수장(계속)							

사업추진계획서

1. 사업개요

시·군			사업구분	노후 상수관망(정수장) 정비사업	
사업명					
사업목표	※ 목표유수율, 정수장정비목표, 재정건정성 제고 계획 등 기재				
현황	○ 총인구 00명, 급수인구 00명 ○ 정수장 0개소, 총 시설용량 000m ³ /일 ○ 송수관로:L= 00km, 배수관로:L= 00km, 급수관로:L= 00km ○ 유수율 00%, 누수율 00%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백만원, 지방비 : 백만원) -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사업위치	노후상수관망 : 급수구역(읍, 면, 동) 노후정수장 : 정수장 위치 표기(도로명 주소)				
주요사업내용	○ 관망 정비 L= 00km ○ 블록시스템(소블록)구축 0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 정수장 개량 Q=000m ³ /일				
사업준비현황	※ 기술진단 완료, 블록구축 용역 수행중 등 기재				
사업관리방식	※ 시·군 자체수행, 공공전문기관 위탁, 다른 광역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위탁 등				
사업추진방식	※ 일괄추진방식, 단계별 추진방식 등				
공사발주방식	※ 기술형 입찰방식(설계·시공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등), 가격형 입찰(기타공사) 등				
운영관리방식	※ 공사 - 운영 분리관리, 공사 - 운영 연계관리 등				
수도요금 현실화계획	○ 착 공(00년)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원/m ³) ○ 현 재(00년)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원/m ³) ○ 준 공(00년)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원/m ³)				
사업담당	직책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과장				
	담당자				
	실무자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A)	기 투자실적	00년예산	향후 투자계획 (00년예산제외)
계					
국 고	소계				
	보조금				
	융자금				
지 방 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3. 사업추진현황

- (일정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 알 수 있도록 작성)
-
- 00년 월 현재 사업진도 : 실시설계 %, 전체공정 %

4. 00년도 사업추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비 구분	00년예산현액			주요 추진내역	추진일정 (연월)
	계	전년이월액	00년예산		
합 계					

※ 사업비 구분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분하되 시설부대경비는 설계비, 건설
사업관리비, 기타부대비로 상세하게 구분

5. 지방비 확보여부 : (확보 또는 미확보)

-
- ※ 확보시 예산명세서 사본 첨부, 미확보시 향후 확보방법 및 일정 등을 기술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자	기 관 명		성 명		
사업추진 부 서 (책임자)	소 속(국/과)		전화(FAX)		
	직·성명		e-mail		
보 조 사 업 명		△△군(시) 노후 상수관망(OO정수장) 정비사업			
사 업 목 표		※ 목표유수율, 정수장정비목표, 재정건정성 제고 계획 등 기재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구간 (위 치)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보조금 교부 신청금액 (천원)	구 분		합 계	기지원액	금회신청액
	합 계				
	국 고	소 계			
		보조금			
		융자금			
	지 방 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환 경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추진계획서 1부 2. 기타 사업설명에 필요한 참고자료					

사업수행상황실적 및 사후관리 보고양식

사업수행상황보고서(00년도 0/4분기)

1. 사업개요

시·군		사업구분	노후 상수관망(정수장) 정비사업		
사업명					
사업목표	※ 목표유수율, 정수장정비목표, 재정건정성 제고 계획 등 기재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백만원, 지방비 : 백만원) -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 사전기술검토 완료(00.00)/예정(00.00)				
사업위치	노후상수관망 : 급수구역(중블록) 노후정수장 : 정수장 위치 표기(도로명 주소)				
주요 사업 내용	계 획	사 업 내 용	전 체	누 적	분 기
	실 적				
		○ 관망 정비 ○ 누수탐사 및 정비 ○ 블록시스템(소블록)구축 ○ 유지관리시스템(소블록) 구축 ○ 정수장 개량 Q=00m³/일 (전면/부분, 통합, 재건설 표시)	• (km) • (km, 개소) • (개소) • (개소) • (% , 공정율)	• • • • •	• • • • •
		○ 관망 정비 ○ 누수탐사 및 정비 ○ 블록시스템(소블록)구축 ○ 유지관리시스템(소블록) 구축 ○ 정수장 개량 Q=00m³/일	/	• • • • •	• • • • •
사업관리방식	※ 시·군 자체수행, 공공전문기관 위탁, 다른 광역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위탁 등 (당초) 00000 → (변경) 00000 (해당시)				
사업추진방식	※ 일괄추진방식, 단계별 추진방식 등				
공사발주방식	※ 기술형 입찰방식(설계·시공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등), 가격형 입찰(기타공사) 등				
운영관리방식	※ 공사 - 운영 분리관리, 공사 - 운영 연계관리 등				
사업담당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실적							향후투자 계획 (다음년도 이후 잔액)
			00년까지		00년 당해연도			00년 당해분기		
			계 획	집 행	본예산	내역조정	집 행	계 획	집 행	
계										
국고	소계									
	보조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3. 사업추진 현황

- (일정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

3-1. 사업실적 전체현황

총 공 정(%)		총 투자비(백만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3-2. 설계추진현황

총 공 정(%)		총 투자비(백만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계약자
계 획	실 적	계약금액	지출액			

3-3. 사전기술검토 현황

구분	일자	총사업비	주요내용
000도→환경부	'00.00.00	(신청) 0000백만원	블록구축 00개, 사업대상지 0개 중블록, 00km 관망정비
환경부→000도	'00.00.00	(검토) 000백만원	블록구축 00개, 사업대상지 0개 중블록, 00km 관망정비

3-4. 사업실적 세부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추진실적 (00~00년)				당해연도 (00년)				당해분기				계약현황	
		공정율			총 투 자 비	공정율			총 투 자 비	공정율			총 투 자 비	계약자	계약 금액
		계 획	실 행	실행 율		계 획	실 행	실행 율		계 획	실 행	실행 율			
노 후 상 수 관 망 정 비 사 업	유수율(%)			-	-			-	-			-	-	-	-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소블록,개수)														
	누수탐사(km)														
	누수복구(건)														
	관망정비 공사(km)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공사 (공정율, %)														
	기타공사 (공정율, %)														
정수장 개량공사 (공정율, %)															

※ 공정표 첨부

4. 분기말 예산집행현황

구분	당해년도 ()/4분기 누적집행현황						
	본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D)	잔액 (C-D)	집행율 (D/C,%)
합계							
○ 국고							
- 보조금							
○ 지방비							
- 시·도비							
- 시·군비							

5. 문제점

-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행정절차로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 행정절차 단계별, 날짜별 상세 기입)
-

6. 사업정상화계획

-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기술)
-
-

참고 1

사업추진 실적

☞ 상수관망 사업 해당

○ 유수율 달성 현황

구 분	사업전년도 (평균)	'Y-3년 (평균)	'Y-2년 (평균)	'Y-1년 (평균)	~'Y.0월 당해년도 (평균)
총 급 수 량(m³/일)					
유 수 수 량(m³/일)					
유효무수수량(m³/일)					
유 수 율 (%)					

○ Y년도 유수율 목표 및 달성 계획

(단위 : 천m³)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획	월별											
	누적											
실 적	공급 량											
	유수 수량											
	월별											
	누적											

○ 유수율 제고 관련 주요공사 및 용역 추진현황

구 분		사업 계 획	추진실적	추진계획							Y년말 공정율	완료 시기
			전년도까지 (~Y-1년)	계	Y년도(당해년도)				Y+1 년			
					소계	1/4	2/4	3/4		4/4		
블록구축 (실적/전체)	대 상 지 (개소)	(개소)	-/-	-/-	-/-	-/-	-/-	-/-	-/-	-/-	00.0%	‘00.0
	외 (개소)	(개소)	-/-	-/-	-/-	-/-	-/-	-/-	-/-	-/-	00.0%	‘00.0
관망정비(km)											00.0%	‘00.0
수도미터교체(개)											00.0%	‘00.0
유지관리시스템(식)											00.0%	‘00.0

○ 유수율 만회대책

블록 고립 완료 유수율 적정 운영, 관망정비 적기 시행 등 목표 유수율 달성 기반 마련

* (블록운영) 블록별 임계지점 수압분석 및 적정 수압관리, 소규모 유량감시 등

* (관망정비) 1차공사 적기 준공('20.6월) 및 2차공사 공정을 관리 철저 등

* (누수탐사/복구) 블록별 유량감시(소규모 포함), 단계시험 등을 통해 효율적 시행

○ 누수탐사 및 복구 실적·계획

구 분		단위	사업 계획 (a)	추진실적			공정율 (%, b/a)	당해연도 추진계획						
				계 (b)	~'19	'20 현재		계	'20					'21
									소계	1/4	2/4	3/4	4/4	
누수탐사 및 복구	누수탐사													
	누수복구 (민원)													

○ 수압 및 야간최소유량 관리계획

- 사업대상지(소블록별) 야간최소유량, 유수율 및 수압관리

구 분		일평균 공급유량 (m³/일)	야간최소유량(일평균, m³/hr)					수압관리 (감압밸브, 개소)			
			전월 (‘00.00)		금월(A) (‘00.00)		목표값 (B)	대비 (A-B)	계획 (실시설계)	운영 현황	추가 계획
			MNF	유수율	MNF	유수율					
00군(합계)											-
중블록 1	소1										-
	소2										-
중블록 2	소1										-
	소2										-
	소3										-
	소4										-
	소5										-
중블록 3	소1										-
	소2										-

○ 사용수량 증대방안

사업실적보고서(완료·폐지)

1. 사업개요

시·군		사업구분	노후 상수관망(정수장) 정비사업		
사업명					
사업목표	※ 목표유수율, 정수장정비목표, 재정건정성 제고 계획 등 기재				
현황	○ 총인구 00명, 급수인구 00명 ○ 정수장 0개소, 총 시설용량 000m ³ /일 ○ 송수관로:L= 00km, 배수관로:L= 00km, 급수관로:L= 00km ○ 유수율 00%, 누수율 00%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백만원, 지방비 : 백만원) -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사업위치	노후상수관망 : 급수구역(읍, 면, 동) 노후정수장 : 정수장 위치 표기(도로명 주소)				
주요사업내용	전체 계획	○ 관망 정비 (km) ○ 누수탐사 및 정비 (km, 개소) ○ 블록시스템(소블록)구축 (개소) ○ 유지관리시스템(소블록)구축 (개소) ○ 정수장 개량 Q=000m ³ /일 (%)			
	00년 실적	○ 관망 정비 (km) ○ 누수탐사 및 정비 (km, 개소) ○ 블록시스템(소블록)구축 (개소) ○ 유지관리시스템(소블록)구축 (개소) ○ 정수장 개량 Q=000m ³ /일 (%)			
사업관리방식	※ 시·군 자체수행, 공공전문기관 위탁, 다른 광역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위탁 등				
사업추진방식	※ 일괄추진방식, 단계별 추진방식 등				
공사발주방식	※ 기술형 입찰방식(설계·시공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등), 가격형 입찰(기타공사) 등				
운영관리방식	※ 공사 - 운영 분리관리, 공사 - 운영 연계관리 등				
수도요금 현실화계획	○ 착 공(00년)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원/m ³) ○ 현 재(00년)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원/m ³) ○ 준 공(00년)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원/m ³)				
사업담당	직책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과장				
	담당자				
	실무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A)	연도별 기 투자 사업비(실제 지출액 기준)					향후투자 예정액(C)	정산액 (A-B)
			계(B)	00년	00년	00년	00년		
계									
국 고	소계								
	보조금								
	융자금								
	보조비율								
지 방 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 부담금									
기 타									

※ 사업완료(폐지포함) 사업의 총사업비(A)는 실제 지원된 국고액을 기준으로 정산잔액(A-B)을 산정, 향후 투자예정액은 공란처리

※ 미완료사업으로서 회계연도 종료에 의한 보고시의 총사업비는 $A=B+C$ 가 되도록 산정, 정산액은 공란 처리

3. 예산집행실적

☐ 결산내역

(단위 : 원)

연도별		당초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00 년도	총액							
	국 고	소계						
		보조금						
	지 방 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기 타							
00 년도	총액							
	국 고	소계						
		보조금						
	지 방 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기 타							
00 년도	총액							
	국 고	소계						
		보조금						
	지 방 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기 타							

□ 당해년도 결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집행현황(00년 0월 0일 현재)						
		당해년도 예산(A)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국 고	소 계							
	보조금							
지 방 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기 타								

○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 사유 :

5. 세부사업 추진내용

-
-
-
-

6. 사업성과 및 목표달성

-
-
-
-

사후관리 계획서

1. 사업개요

사 업 개 요	시·군			사업구분	노후 상수관망(정수장) 정비사업	
	사업명					
	사업목표	※ 관망정비목표, 정수장정비목표, 재정건정성 제고 계획 등 기재				
	현황	○ 총인구 00명, 급수인구 00명 ○ 정수장 0개소, 총 시설용량 000m ³ /일 ○ 배수지 0개소, 총 시설용량 000m ³ /일 ○ 송수관로:L= 00km, 배수관로:L= 00km, 급수관로:L= 00km ○ 유수율 00%, 누수율 00%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백만원, 지방비 : 백만원) -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사업위치	노후상수관망 : 급수구역(읍, 면, 동) 노후정수장 : 정수장 위치 표기(도로명 주소)				
운 영 계 획	주요사업내용	○ 관망 정비 L= 00km ○ 누수탐사 및 정비 L= 00km, 00건 ○ 블록시스템(소블록)구축 0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 정수장 개량 Q=000m ³ /일				
	운영관리방식					
	수도경영개선계획	○ 요금현실화, 운영관리효율화, 절감비용 재투자 등				
	수도요금현실화계획	○ 현재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0원/m ³) ○ 준공년도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0원/m ³)				
	유지관리계획	○ 유수율 관리 ○ 정수장 공정 및 수질 관리 ○ 민원 관리 ○ 자료·통계 관리(수량, 수압, 수질 등) ○ 절감운영비 재투자관리 ○ 유지관리시스템 관리				
	사업담당	직책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과장						
담당자						
실무자						

2. 사후관리 계획

☐ 유지관리계획

1) 우수율 계획

○

○

(단위 : %)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유수율	전체											
	사업대상											
	블록별											

※ D : 준공년도

※ 우수율은 성과판정시 우수율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급수체계 변경, 급수구역 확장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출

2) 정수장 공정 및 수질 관리계획

○

○

(단위 : %)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가동률												
이용률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관리항목 등을 고려하여 작성

(단위 : NTU)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탁도	평 균											
	최 소											
	최 대											

※ 탁도, 총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등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등을 추가 선정하여 작성

3) 시설물 점검 계획

○

○

4) 민원 관리

○

○

(단위 : 건)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민원	수질											
	단수											

※ 수질, 출수불량, 과수압, 단수, 누수, 요금 등 유형별 민원을 추가 선정하여 작성

5) 유지관리시스템 관리

○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전담인력수											
유지보수비											

(단위 : %)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데이터 수신율											
현행화율											

※ 정수장, 배수지 및 블록별 유량, 수압, 수질 등 모니터링 항목별 계측데이터 정상 수신여부를 고려하여 작성

※ 사업완료 이후 수도시설, 감시설비, 수용가 수도미터 등 변경내역 첨부

☐ 수도사업 경영개선 계획

1)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

○

(단위 : 원, %)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수도요금											
현실화율											

2) 총괄원가 절감 계획

○

○

(단위 : %)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총괄원가 절감률											

3) 절감운영비 재투자 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재투자비											
재투자율											

3. 시설운영관리 예산 계획(관망, 정수장)

○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예산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계											
○ 정수장											
• 인 건 비											
• 전 력 비											
• 약 품 비											
• 원정수구입비											
• 기 타											
•											
•											
○ 관망											
• 인 건 비											
• 전 력 비											
• 누수복구비											
• 기 타											
•											

※ D : 준공년도

4. 운영조직 전문화 계획

○

○

(단위 : 명)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운영인력(총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관망관리 대행업											

※ 운영관리 조직도 첨부

사후관리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사업개요	시·군		사업구분		노후 상수관망(정수장) 정비사업			
	사업명							
	사업목표							
	현황		※ 관망정비목표, 정수장정비목표, 재정건정성 제고 계획 등 기재 ○ 총인구 00명, 급수인구 00명 ○ 정수장 0개소, 총 시설용량 000m ³ /일 ○ 배수지 0개소, 총 시설용량 000m ³ /일 ○ 송수관로:L= 00km, 배수관로:L= 00km, 급수관로:L= 00km ○ 유수율 00%, 누수율 00%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위치							
	주요사업내용		○ 관망 정비 L= 00km ○ 누수탐사 및 정비 L= 00km, 00건 ○ 블록시스템(소블록)구축 0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 정수장 개량 Q=000m ³ /일					
운영계획	운영관리방식							
	수도경영개선계획		○ 요금현실화, 운영관리효율화, 절감비용의 재투자 등					
	수도요금현실화계획		○ 현재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0원/m ³) ○ 준공년도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0원/m ³)					
	유지관리계획	계획	○ 유수율 관리 ○ 정수장 공정 및 수질 관리 ○ 민원 관리 ○ 자료·통계 관리(수량, 수압, 수질 등) ○ 절감운영비 재투자관리 ○ 유지관리시스템 관리					
		실적	○ 유수율 관리 ○ 정수장 공정 및 수질 관리 ○ 민원 관리 ○ 자료·통계 관리(수량, 수압, 수질 등) ○ 절감운영비 재투자관리 ○ 유지관리시스템 관리					
	사업담당		직책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과장					
			담당자					
실무자								

2. 사후관리 실적(00년)

☐ 유지관리실적

1) 우수율 실적

○

○

(단위 : %)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유수율	전체	계 획											
		실 적											
	사업대상	계 획											
		실 적											
	블록별	계 획											
		실 적											

※ D : 준공년도

※ 우수율은 성과판정시 우수율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급수체계 변경, 급수구역 확장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출

2) 정수장 공정 및 수질 관리 실적

○

○

(단위 : %)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가동률	계 획	실 적											
		실 적											
이용률	계 획	실 적											
		실 적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관리항목 등을 고려하여 작성

(단위 : NTU)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탁도	계 획	평균											
		최소											
		최대											
	실 적	평균											
		최소											
		최대											

※ 탁도, 총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등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등을 추가 선정하여 작성

3) 민원 관리 실적

○

○

(단위 : 건)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민원	수질	계획											
		실적											
	단수	계획											
		실적											

※ 수질, 출수불량, 과수압, 단수, 누수, 요금 등 유형별 민원을 추가 선정하여 작성

4) 유지관리시스템 관리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전담 인력수	계획											
	실적											
유지 보수비	계획											
	실적											

(단위 : %)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데이터 수신율	계획											
	실적											
현행화 율	계획											
	실적											

※ 정수장, 배수지 및 블록별 유량, 수압, 수질 등 모니터링 항목별 계측데이터 정상 수신여부를 고려하여 작성

※ 사업완료 이후 수도시설, 감시설비, 수용가 수도미터 등 변경내역 첨부

☐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

1) 수도요금 현실화 실적

○

○

(단위 : 원)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수도 요금	계 획											
	실 적											

2) 총괄원가 절감 실적

○

○

(단위 : 원)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총괄 원가	계 획											
	실 적											

3) 절감운영비 재투자 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재투 자비	계 획											
	실 적											
재투 자율	계 획											
	실 적											

3. 시설운영관리 예산 실적(관망, 정수장)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예 산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계	계획											
	실적											
○ 정수장	계획											
	실적											
• 인 건 비	계획											
	실적											
• 전 력 비	계획											
	실적											
• 약 품 비	계획											
	실적											
• 원정수구입비	계획											
	실적											
• 기 타	계획											
	실적											
○ 관망	계획											
	실적											
• 인 건 비	계획											
	실적											
• 전 력 비	계획											
	실적											
• 누수복구비	계획											
	실적											
• 기 타	계획											
	실적											

※ D : 준공년도

4. 운영조직 전문화 실적

○

○

(단위 : 명)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운영인력 (총원)	계 획											
	실 적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계 획											
	실 적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계 획											
	실 적											
관망관리 대행업	계 획											
	실 적											

※ 운영관리 조직도 첨부

사후관리 실적보고서 [목표 유수율 미확보시]

1. 사업개요

사 업 개 요	시·군		사업구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사업명						
	사업목표		※ 목표유수율, 정수장정비목표, 재정건정성 제고 계획 등 기재				
	현황		○ 총인구 00명, 급수인구 00명 ○ 배수지 0개소, 총 시설용량 000m³/일 ○ 송수관로:L= 00km, 배수관로:L= 00km, 급수관로:L= 00km ○ 유수율 00%, 누수율 00%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백만원, 지방비 : 백만원) -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사업위치		노후상수관망 : 급수구역(읍, 면, 동)				
	주요사업내용		○ 관망 정비 L= 00km ○ 누수탐사 및 정비 L= 00km, 00건 ○ 블록시스템(소블록)구축 0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운 영 계 획	유수율목표 미달성 주요원인		예시) 관리미흡, 전문성 부족 등				
	사후관리 주요방안		예시) 기술력 제고, 기술 컨설팅. 상수도 인력 전문화 방안, 전문기관 활용 등				
	수도경영 개선계획		○ 요금현실화, 운영관리효율화 절감비용의 재투자 등				
	수도요금 현실화계획		○ 현재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0원/m³) ○ 준공년도 : 수도요금 현실화율 00% (평균 수도요금 000원/m³)				
	유지 관리 계획	계 획	○ 유수율 관리 ○ 민원 관리 ○ 자료·통계 관리(수량, 수압, 수질 등) ○ 절감운영비 재투자관리 ○ 유지관리시스템 관리				
		실 적	○ 유수율 관리 ○ 민원 관리 ○ 자료·통계 관리(수량, 수압, 수질 등) ○ 절감운영비 재투자관리 ○ 유지관리시스템 관리				
	사업담당		직책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과장				
담당자							
실무자							

2. 사후관리 실적(00년)및 사후관리 자구책(00년 이후)

☐ 유지관리실적 및 자구책(만회대책)

1) 우수율 실적 및 목표수립

○

○

(단위 : %)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유수율	전체	계 획											
		실 적											
		목 표											
	사업대상	계 획											
		실 적											
		목 표											
	블록별	계 획											
		실 적											
		목 표											

※ D : 준공년도

※ 우수율은 성과판정시 우수율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급수체계 변경, 급수구역 확장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출

2) 우수율 개선 방안(만회대책)

○ 기술력 제고 대책 : 기술 컨설팅(유역수도지원센터, 상하수도협회 활용 등), 교육 등 다양한 기술력 제고 방안 마련

- 세부 추진계획(일정 포함) 작성

○ 전문성 확보 대책: 상수도 인력 전문화 방안(전문직위 활용 등) 마련, 운영관리방식 전문화(전문기관 활용 등) 대책 등

- 세부 추진계획(일정 포함) 작성

<우수율 개선방안 마련 예시>

사업대상 유수율	80 ~ 85%	80 ~ 75%	75%미만
개선방안(안)	- 기술컨설팅 등 - 상수도 인력 전문화 등	인력 전문교육 실시 등 기술력 제고	운영관리방식 전문화

3) 정수장 공정 및 수질 관리 실적

○

○

(단위 : %)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가동률	계획											
	실적											
	목표											
이용률	계획											
	실적											
	목표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관리항목 등을 고려하여 작성

(단위 : NTU)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탁도	계획	평균											
		최소											
		최대											
	실적	평균											
		최소											
		최대											

※ 탁도, 총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등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등을 추가 선정하여 작성

4) 민원관리 실적

○

○

(단위 : 건)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민원	수질	계획											
		실적											
	단수	계획											
		실적											

※ 수질, 출수불량, 과수압, 단수, 누수, 요금 등 유형별 민원을 추가 선정하여 작성

5) 유지관리시스템 관리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전담 인력수	계획											
	실적											
유지 보수비	계획											
	실적											

(단위 : %)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데이터 수신율	계획											
	실적											
현행화 율	계획											
	실적											

※ 정수장, 배수지 및 블록별 유량, 수압, 수질 등 모니터링 항목별 계측데이터 정상 수신여부를 고려하여 작성

※ 사업완료 이후 수도시설, 감시설비, 수용가 수도미터 등 변경내역 첨부

□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

1) 수도요금 현실화 실적

○

○

(단위 : 원)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수도 요금	계 획											
	실 적											

2) 총괄원가 절감 실적

○

○

(단위 : 원)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총괄 원가	계 획											
	실 적											

3) 절감운영비 재투자 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재투자비	계획											
	실적											
재투자율	계획											
	실적											

3. 시설운영관리 예산 실적(관망, 정수장)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예산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계	계획											
	실적											
○ 정수장	계획											
	실적											
• 인 건 비	계획											
	실적											
• 전 력 비	계획											
	실적											
• 약 품 비	계획											
	실적											
• 원정수구입비	계획											
	실적											
• 기 타	계획											
	실적											
○ 관망	계획											
	실적											
• 인 건 비	계획											
	실적											
• 전 력 비	계획											
	실적											
• 누수복구비	계획											
	실적											
• 기 타	계획											
	실적											

※ D : 준공년도

4. 운영조직 전문화 실적

○

○

(단위 : 명)

구 분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비고
운영인력 (총원)	계 획											
	실 적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계 획											
	실 적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계 획											
	실 적											
관망관리 대행업	계 획											
	실 적											

※ 운영관리 조직도 첨부

붙임2.

수도사업 경영개선실적
평가기준 및 보고양식

수도사업 경영개선실적 평가기준

1. 평가목적 및 활용

- 지방상수도가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운영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수도요금현실화 및 원가절감 실적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하여, 공사비의 0 ~ 20%를 인센티브로 차등 보조함

2. 평가대상

-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미평가 대상

3. 사업연차별 평가항목 및 기준

- 지역균형 발전 및 수도사업 경영의지(2차년도)와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평가(3차년도 이후)로 구분하여 평가

구분	평가내용					
평가항목	-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사업 경영의지 평가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평가			
평가시기	-	D년 (2024년)	D+1년 2월 (2025년 2월)	D+2년 2월 (2026년 2월)	D+3년 2월 (2027년 2월)	D+4년 2월 (2028년 2월)
국고보조시기	1차년도 D년 (2024년)	2차년도 보조율 D+1년 (2025년)	3차년도 보조율 D+2년 (2026년)	4차년도 보조율 D+3년 (2027년)	5차년도 보조율 D+4년 (2028년)	6차년도 보조율 D+5년 (2029년)
지자체 작성 보고서	-	지역균형 발전 및 수도사업 경영의지 보고서 (양식11)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보고서 (양식12)			
평가기준	-	평가방법 참고	평가방법 참고			

※ ()은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일 때 기준으로 평가 및 국고보조 교부 시기 등의 예시이며, 여기서 D는 사업착수년도인 2024년을 의미

※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7차년도 이후 국고보조가 필요한 경우 과거 최근평가 결과 준용

※ 1차년도는 별도 평가없이 기본보조율(50%)로 국고보조

4.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사업 경영의지 평가(2차년도 국고보조율)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지역균형발전 (50)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해당시	25
	성장촉진지역	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비에서 지정한 성장촉진지역 해당시	25
수도사업 경영의지 (50)	지방비확보	당해연도 지방비 예산 대비 확보한 지방비 비중	25
	사업추진의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현실화(변경,부분검토 등), 상수관망 기술진단 시행,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기타 중점관리지역 해제 및 노후재질관 교체계획 수립 등	25

※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사업 경영의지 항목으로 평가하여 2차년도 국고보조율에 반영

※ 지방비확보

- 예) 당해연도 지방비가 10억원일 때 확보한 지방비가 5억원인 경우 12.5점 부여($25 * 5 \div 10$)

※ 사업추진의지

- 평가내용 이행실적에 따라, 적극적 추진의지 있음(25점), 추진의지 다소 있음(15점), 추진의지 일부 있음(10점), 추진의지 없음(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

○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 평가항목 배점(3차년도 이후 국고보조율)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자료제출 적정성 (10)	경영실적 보고서	•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평가		5
	총괄원가 계산서	• 총괄원가 계산서 제출평가(공기업특별회계로 전 환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별도평가를 통해 배 점 부여)		5
수도요금 현실화 (30)	수도요금 인상액	• 수도요금인상 실적 평가		10
	수도요금 인상계획의 구체성	• 지방의회 승인 계획 및 실적 평가		10
	원가절감	• 원가절감 실적 평가		10
운영관리 효율화 (50)	우수제품 사용실적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자재 중 법정 우선구 매제품 사용 실적 평가		5
	광역자치단체 노력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업비 중 광역자치단체 분담률 등의 실적 평가		5
	노후시설 조기정비 노력	• 사업비 조기집행, 전년도 집행율 등 조속한 정비 노력도 평가		10
	사후유지관리 / 사업추진의지	• 유지관리시스템 운영수준		10
		1. 기존 정비사업 추진지역	• 우수율 성과유지 노력	10
			• 절감된 운영비 재투자	10
		2. 최초 정비사업 추진지역	• 과거우수율 제고노력	10
			• 사업추진의지	10
기타 (10)	정부정책 추진의지	•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돗물 위생관리 종 합대책 및 기타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 평가		5
	지역균형발전	• 인구감소, 성장축진 선정지역 평가		5

※ 자료제출적정성, 수도요금현실화, 운영관리효율화, 기타항목을 평가하여 3차년도 이후
(3차년도 포함) 국고보조율에 반영

5.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보고서 평가방법

○ 보조율 반영시기, 보고서 작성시기 및 평가항목의 기준년도

구분	기준년도				비 고
보조율 반영시기	3차년도 보조율 D+2년 (2026년)	4차년도 보조율 D+3년 (2027년)	5차년도 보조율 D+4년 (2028년)	6차년도 보조율 D+5년 (2029년)	
보고서 작성시기	D+1년 (2025년 2월)	D+2년 (2026년 2월)	D+3년 (2027년 2월)	D+4년 (2028년 2월)	
평가항목의 기준년도	D년 2024년	D+1년 2025년	D+2년 2026년	D+3년 2027년	

※ 평가항목 중 회계자료 관련 사항은 표기된 기준년도에 확보가능한 직전년도의 회계결산자료 기준으로 평가

○ 평가항목의 세부기준년도

평가항목	기준년도				비 고
경영실적 보고서	D년 (2024년)	D+1년 (2025년)	D+2년 (2026년)	D+3년 (2027년)	
총괄원가 계산서	D-1년 기준 (2023년)	D년 (2024년)	D+1년 (2025년)	D+2년 (2026년)	회계 자료
수도요금 인상액	D년 (2024년)	D+1년 (2025년)	D+2년 (2026년)	D+3년 (2027년)	
수도요금 인상 계획의 구체성	D년 (2024년)	D+1년 (2025년)	D+2년 (2026년)	D+3년 (2027년)	
원가절감	D-1년 기준 (2023년)	D년 (2024년)	D+1년 (2025년)	D+2년 (2026년)	회계 자료
우수제품 사용실적	D년 (2024년)	D+1년 (2025년)	D+2년 (2026년)	D+3년 (2027년)	
광역자치단체 노력	D년 (2024년)	D+1년 (2025년)	D+2년 (2026년)	D+3년 (2027년)	
노후시설 조기정비노력	D년 (2024년)	D+1년 (2025년)	D+2년 (2026년)	D+3년 (2027년)	
지역균형발전	D년 (2024년)	D+1년 (2025년)	D+2년 (2026년)	D+3년 (2027년)	
사후유지관리 /사업추진의지	D년 (2024년)	D+1년 (2025년)	D+2년 (2026년)	D+3년 (2027년)	

※ ()은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일때 평가대상 실적자료의 기준년도 예시이며, 여기서 D는 사업착수년도인 2024년을 의미

※ 수도요금인상액, 원가절감은 사업착수 직전년도(D-1) 대비 작성 당해연도 개선실적에 대해 평가

※ 원가절감 등 회계자료 평가사항은 작성 당해연도에 확보가능한 직전년도의 회계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1) 경영실적 보고서(5점)

- 양식12의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제출여부 평가

경영실적 보고서	배점
경영실적 보고서 미제출	0
경영실적 보고서 제출	5

2) 총괄원가 계산서(5점)

- 총괄원가 계산서 제출여부 평가

경영실적 보고서	배점
총괄원가 계산서 미제출	0
총괄원가 계산서 제출	5

※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지 않은 지자체는 회계감사 미적용 대상이므로 총괄원가계산서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등 소명 시 배점 부여

3) 수도요금 인상액(10점)

-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수도요금 관련 조례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평가하며, 사업착수 직전년도(12월 31일 기준) 대비, 평가당해 직전년도(12월 31일 기준) 가정용 수도요금의 인상 규모로 평가

가정용 수도요금 인상금액	배점
인상금액 없음 또는 인하	0
0원 초과 50원 미만 인상	5
50원 이상 100원 미만 인상	6
100원 이상 150원 미만 인상	7
150원 이상 200원 미만 인상	8
200원 이상 인상	10

※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일 때,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금이 100원이고, 평가당해 직전년도 말 조례에 따른 금액이 160원일 경우 평가점수는 8점임

※ 누진세 사용 지자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1단계 구간의 금액기준으로 평가

예1) 누진세 사용 지자체 인상금액 평가

구분	인상전(A)	인상후(B)	인상금액	최종배점
1단계(0~30m ³)	500	560	60(적용금액)	6
2단계(30~40m ³)	650	720	70	
3단계(40m ³ ~)	800	880	80	

※ 사업착수 직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누진세를 적용하였으나 평가당해 직전년도 말 기준 요금단일화를 한 지자체의 경우, 누진세 1단계 구간 기준 대비 인상금액으로 평가

예2) 요금단일화로 변경한 지자체 인상금액 평가

구분	인상전 (누진세)	인상후 (단일화)	인상금액	최종배점
1단계(0~30m ³)	500	600	100(적용금액)	7
2단계(30~40m ³)	650		-50	
3단계(40m ³ ~)	680		-80	

※ 요금 인상에 따른 최초 득점 이후, 차년도부터 추가 요금인상이 없는 경우 1회계년도 경과 시마다 해당 배점에서 1점씩 삭감(최하점 0점)

예3) 요금 인상에 따른 연차별 배점부여(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일 때)

구분	2023.12.31. 기준요금	2026년 (3차년도 평가)	2027년 (4차년도 평가)	2028년 (5차년도 평가)	2029년 (6차년도 평가)
수도요금	100	150	150	150	210
인상금액	-	50	-	-	110
배점	-	6 (감점없음)	5 (1점삭감)	4 (2점삭감)	7 (삭감없음)

※ 기타사항 : 읍면 / 동지역으로 요금 구분시 동지역 기준으로 평가

4) 수도요금 인상계획의 구체성(10점)

○ 수도요금 인상계획의 구체성에 따라 평가

수도요금 인상계획의 구체성 수준	배점
제시된 요금인상 계획이 없음	0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 등 관련 계획이 존재함	2
상수도 사업본부장(또는 사업소장)의 결재 등 수도요금인상 계획이 마련됨	3
지자체장 결재 등 수도요금인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함	5
지방의회 의결 등 확정된 수도요금인상 계획이 존재함	10

※ 요금인상계획의 구체성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 기준년도 이전의 인상계획만 인정하여 득점 부여

※ 예) 2026년에 인상계획에 대해서는 2026년 기준 평가시까지 득점, 2027년 기준 평가시 부터는 미득점

※ 최초 득점 이후 인상계획년도 이후 차년도부터 추가 요금인상계획이 없는 경우 1회계년도 경과 시마다 해당 배점에서 1점씩 삭감(최하점 0점)

※ 제출한 인상계획에 따라 요금인상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인상계획년도부터 평가항목에 대해 5점 감점(단, 당초 인상계획에서의 인상규모 및 시기와 관계없이 요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감점 미부여)

※ 가정용 수도요금 인상계획으로 평가

예1) 인상계획에 따른 요금인상 단행시 배점부여(미감점,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일 때

구분	2023.12.31. 기준요금	2026년 (3차년도 평가)	2027년 (4차년도 평가)	2028년 (5차년도 평가)	2029년 (6차년도 평가)
인상계획 제출	-	2028년 150원으로 인상계획 (지자체장 결재)	-	-	-
수도요금	100	100	100	150 (50원 인상)	150
배점		5	4	3 (감점없음)	점수미부여 -

예2) 인상계획에 따른 요금인상 부분이행시(미감점,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일 때)

구분	2023.12.31. 기준요금	2026년 (3차년도 평가)	2027년 (4차년도 평가)	2028년 (5차년도 평가)	2029년 (6차년도 평가)
인상계획 제출	-	2028년 150원으로 인상계획 (지자체장 결재)	-	-	-
수도요금	100	100	100	130 (30원 인상)	130
배점		5	4	3 (감점없음)	점수미부여 -

예3) 인상계획에 따른 요금인상 부분이행시(감점,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일 때)

구분	2023.12.31. 기준요금	2026년 (3차년도 평가)	2027년 (4차년도 평가)	2028년 (5차년도 평가)	2029년 (6차년도 평가)
인상계획 제출	-	2028년 150원으로 인상 (지자체장 결재)	-	-	-
수도요금	100	100	100	100 (미인상)	120 (20원 인상)
배점		5	4	-5	점수미부여 (감점없음)

예4) 인상계획에 따른 요금 미인상시(감점,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일 때)

구분	2023.12.31. 기준요금	2026년 (3차년도 평가)	2027년 (4차년도 평가)	2028년 (5차년도 평가)	2029년 (6차년도 평가)
인상계획 제출	-	2028년 150원으로 인상계획 (지자체장 결재)	-	-	-
수도요금	100	100	100	100 (미인상)	100 (미인상)
배점		5	4	-5	-5

5) 원가절감(10점)

○ 원가절감은 항목별로 원가절감 실적에 따라 평가

구 분	절감실적						비고
	0%	3%	6%	9%	12%	15%	
인력운영비(인원수)	0	1	2	3	4	5	인원수감소율
수선유지교체비	0	1	2	3	4	5	총액감소율

※ 사업착수 직전년도 대비 평가기준년도에 확보가능한 직전년도의 상수도 통계의 인원수 및 총괄원가계산서의 수선유지교체비 절감실적으로 평가

※ 3차년도 최초 평가당시 총괄원가계산서 또는 상수도통계의 기준년도가 사업착수 직전년도(D-1) 일 경우 해당 항목은 미평가

※ 사업착수 직전년도(D-1) 총괄원가계산서 미제출 시 연차별 수선유지교체비 절감실적 산출 불가에 따라, 수선유지교체비 절감 항목 0점 부여, 단,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지 않은 지자체는 배점 부여상수도통계 기준으로 평가하여 배점부여(단,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 제출 등 소명한 지자체에 한함)

※ 구간내 점수는 직선 보간법으로 계산

6) 우수제품 사용실적(5점)

○ 평가기준년도 예산 중 법정 우선구매제품의 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

※ 사업 후 지속적인 상수도시설의 기능유지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유지관리시스템, 누수저감 및 유수량 증대를 위한 누수감지기술, 수압관리기술 등 포함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 우선구매제품 포함

구분	법정 우선구매제품 사용률					
	0%	0%초과 ~2.5%미만	2.5%이상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10%미만	10%이상
배점	0	1	2	3	4	5

7) 광역자치단체 노력(5점)

-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추진시키는 지역은 광역자치단체의 기여도(지방 분담실적)를 반영하여 평가

분담률	0%	0%초과 ~2.5%미만	2.5%이상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10%미만	10%이상
배점	0	1	2	3	4	5

※ 분담률

= 광역자치단체 분담액 ÷ 평가기준년도 예산(지방비)

※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특별자치도 등)에서 사업 직접참여 시에는 0점 부여

8) 노후시설 조기정비노력 (10점)

- 사업비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평가(국비기준)

사업비 조기집행	실적이 없음	실적이 있음	비고
배점	0	4	상반기 기준

※ 평가기준년도의 상반기 조기집행(예: 평가기준년도 예산의 60%) 달성 또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전 교부된 국비우선집행이나 지자체 추경예산 성립 전 국조보조사업 예산집행 등 실적

- 사업비 집행율에 대해서 평가(국비기준)

사업비 집행율	집행율 60%미만	집행율 60%이상 75%미만	집행율 75%이상 90% 미만	집행율 90% 이상	비고
배점	0	2	4	6	연말기준

※ 위탁사업의 경우 수탁기관의 실행집행률 기준으로 평가

9) 사후유지관리/사업추진의지(30점)

- 기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이 완료된 지자체와 최초로 신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구분하여 기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사후유지관리 노력 및 지자체 사업추진 노력도를 평가
- 유지관리시스템 운영수준 확인을 위한 유역수도운영지원 시스템 우수율 데이터 연계 및 상수도(정수장 및 관망) 통합DB 구축 평가

※ 기존사업·신규사업 지자체 구분없이 평가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수준	유역수도운영지원 시스템 유수율 데이터 연계	상수도 (정수장 및 관망) 통합DB 구축	유역수도운영지원 시스템 유수율 데이터 연계 및 상수도(정수장 및 관망) 통합DB 구축 시
배점	5	5	10

※ 유역수도운영지원 시스템 유수율 데이터 연계 평가배점은 지자체 전체 유수율 및 대블록
까지 연계시 3점, 중블록까지 연계시 4점, 소블록까지 연계시 5점 부여

9-1) 사후유지관리(기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 완료 지자체)

○ 유수율 성과유지노력

유수율 성과유지 노력	83.0% 미만	83.0% 이상 ~ 84.0% 미만	84.0% 이상 ~ 84.5% 미만	84.5% 이상 ~ 85.5% 미만	85.5% 이상 ~ 86.0% 미만	86.0% 이상 ~ 87.0% 미만	87.0% 이상
배점	-5(감점)	-4(감점)	-3(감점)	4	6	8	10

※ 기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 완료사업 지자체(완료사업의 사업대상지)에 대해 평가

※ 2개 이상 사업을 추진 완료한 경우, 평균 실적으로 산출

※ 기존 완료사업의 목표유수율이 조정 된 경우, 평가구간은 별도 기준으로 달리하여 적용

○ 절감된 운영비에 대해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한 재투자 비율 평가

절감된 운영비 재투자 비율	성과판정 합격 이후 유수율 제고사업 실적 없음	재투자비율 0.0% 초과 ~5.0% 미만	재투자비율 5.0% 이상 ~10.0% 미만	재투자비율 10.0% 이상 ~20.0% 미만	재투자비율 20.0%
배점	0	4	6	8	10

※ 유수율 제고사업 투자규모 비율

= 과거 3년간 유수율 제고 관련 평균 집행 또는 발주금액(원/년) ÷ 절감된 운영비(원/년)

- 유수율 제고사업비 : GIS구축, 블록구축, 노후관 교체 사업 및 관련설계, 유수율제고·운영효율화 컨설팅·관망관리대행 등을 포함(단, 국고 실적은 미포함)

- 실적 인정기준 : 특정 유수율 제고사업의 기간이 과거 3년 내 일부만 포함될 경우, 해당 연도만큼 특정 유수율 제고 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로 포함

- 절감된 운영비 : 기존 사업착수전 유수율 및 성과판정 합격 달성시 유수율을 고려하여 산출 된 누수저감량과 기존 사업착수전 총괄원가를 고려하여 산정 된 누수 절감액(누수저감량 * 총괄원가)

※ 최초 수도사업경영 개선실적평가(3차년도)에 평가를 실시하고 4차년도 이후 평가시에는 최초 평가점수 적용(단, 자료 미제출 등으로 평가점수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차년도 재평가 실시)

9-2) 사업추진의지(최초로 신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 과거 3년간의 우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투자규모에 따라 평가

절감된 운영비 재투자 비율	과거 3년간 우수율 제고사업 실적이 없음	우수율제고 사업 투자비율 0.0% 초과~ 5.0% 미만	우수율제고 사업 투자비율 5.0% 이상~ 10.0% 미만	우수율제고 사업 투자비율 10.0% 이상~ 15.0% 미만	우수율제고 사업 투자비율 15.0% 이상
배점	0	4	6	8	10

※ 우수율 제고사업 투자규모 비율

= 우수율제고 관련사업 사업비(3년간) ÷ 급수수익(3년평균)

- 우수율 제고사업비 : GIS구축, 블록구축, 노후관 교체 사업 및 관련설계, 우수율제고·운영 효율화 컨설팅·관망관리대행 등을 포함(단, 국고 실적은 미포함)
- 실적 인정기준 : 특정 우수율 제고사업의 기간이 과거 3년 내 일부만 포함될 경우, 해당 연도만큼 특정 우수율 제고 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로 포함

※ 최초 수도사업경영 개선실적평가(3차년도)에 평가를 실시하고 4차년도 이후 평가시에는 최초 평가점수 적용(단, 자료 미제출 등으로 평가점수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차년도 재평가 실시)

○ 사업추진의지

사업추진의지	추진의지(실적) 없음	추진의지 일부 (실적) 있음	추진의지 다소 (실적) 있음	적극적 추진의지(실적) 있음
배점	0	3	6	10

※ 수도정비 기본계획 현실화(변경,부분검토 등), 상수관망 기술진단 시행,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기타 중점관리지역 해제·노후재질관 교체계획 수립 및 지방비 확보 등 이행실적에 따라 평가

10) 정부정책 추진의지(5점)

정부정책 추진의지	추진의지(실적) 없음	추진의지(실적) 있음	적극적 추진의지(실적) 있음
배점	0	3	5

※ 정부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고려하는 세부항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수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통합,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2019,환경부),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2020,환경부) 등 정부정책 추진의지 검토

11) 지역균형발전(5점)

○ 인구감소지역 및 성장촉진지역 해당 여부에 대해 평가

지역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모두 미해당	인구감소지역 해당시	성장촉진지역 해당시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모두 해당시
배점	0	3	3	5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성장촉진지역

수도사업 경영개선실적 보고양식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사업 경영의지 보고서(0000년) 양식

※ 아래 서식을 참고로 작성하되, 서식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 별도 자료로 첨부가능

1. 사업개요

시·군			사업구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사업명					
사업목표	※ 목표유수율, 중점관리지역해제, 노후재질관 교체 등 기재				
현황	○ 총인구 00명, 급수인구 00명 ○ 정수장 0개소, 총 시설용량 000m ³ /일 ○ 송수관로:L= 00km, 배수관로:L= 00km, 급수관로:L= 00km ○ 유수율 00%, 누수율 00%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지방비 , 기타)				
사업위치	○ 노후상수관망 : 급수구역(읍, 면 동)				
주요사업내용	○ 관망 정비 D= 00mm, L= 00km ○ 블록시스템(소블록)구축 0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기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수행 현황	○ 노후상수 관망사업 실시완료/시행 중 (0000년~0000년) - 00급수구역 등 0000년 기준 유수율 00.0% ○ 노후상수 정수장) 실시완료/시행 중 - 시설용량 0,000m ³ /일 통합재건설 ※ 기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만 작성				
지역균형발전	○ 인구감소 지역 지정/미지정 ○ 성장촉진 지역 지정/미지정				
수도사업 경영의지	○ 지방비확보	2020년 지방비 예산 0,000백만원 중 0,000백만원 확보			
	○ 사업추진의지	※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부분검토 등, 0000년) ※ 상수관망 기술진단 시행(0000년)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기타 중점관리지역 해제 및 노후재질관 교체계획 수립 등			
사업담당	직책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과장				
	담당자				
	실무자				

2. 수도사업 경영의지 자료(별도 증빙자료 제출)

○ 지방비 확보

(단위 : 백만원)

구분	0000년 예산	지방비 확보	비 고
계	00,000		
국비	0,000		
지방비	0,000	0,000	

※ 지방비 확보 관련 예산편성서 등 근거자료 제출

○ 수도정비 기본계획 현실화(0000년)

※ 최근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부분변경) 관련 환경부 승인공문, 요약보고서 등 근거자료 제출

○ 상수관망 기술진단 시행(0000년)

※ 상수관망 기술진단에 따른 노후관망에 대한 원인 분석, 불량 및 심각한 블록에 대한 개량 방안, 상수도관망에 대한 종합적인 구축방안 등 관련 요약보고서 등 근거자료 제출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상수도관망 세척 연차별 시행 계획, 연차별 목표유수율 설정 및 세부 실행계획, 상수도관망시설 점검·정비계획, 상수도관망시설 정보관리계획, 그 밖에 시설안정화 및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관련 요약보고서 등 근거자료 제출

○ 기타 중점관리지역 해제, 노후재질관 교체계획 수립 등

※ 중점관리지역 해제계획, 노후재질관 교체계획 수립 등 관련 요약보고서 등 근거자료 제출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보고서(0000년) 양식

※ 아래 서식을 참고로 작성하되, 서식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 별도 자료로 첨부가능

1. 사업개요

시·군		사업구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사업명									
사업목표	※ 목표유수율, 중점관리지역해제, 노후제질관 교체 등 기재								
현황	○ 총인구 00명, 급수인구 00명 ○ 정수장 0개소, 총 시설용량 000m ³ /일 ○ 송수관로:L= 00km, 배수관로:L= 00km, 급수관로:L= 00km ○ 유수율 00%, 누수율 00%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 지방비 , 기타)								
사업위치	○ 노후상수관망 : 급수구역(읍, 면 동)								
주요사업내용	○ 관망 정비 D= 00mm, L= 00km ○ 블록시스템(소블록)구축 0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기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수행 현황	○ 노후상수 관망사업 실시완료/시행 중 (0000년~0000년) - 00급수구역 등 0000년 기준 유수율 00.0% ○ 노후상수 정수장 실시완료/시행 중 - 시설용량 0,000m ³ /일 통합재건설 ※ 기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만 작성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	구분	기준년도 (0000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6차년도 (0000년)	
	가정용 수도요금(원/m ³)								
	수도요금 인상계획 구체성	※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0000년 조례제정 계획							
	원가 절감(%)	인력운영비		00%	00%	00%	00%		
		수선유지교체비		00%	00%	00%	00%		
	우수제품 사용실적(%)			00%	00%	00%	00%		
	광역자치단체 분담률(%)		※ 00도로부터 지방비 00% 지원						
	노후시설 조기정비 노력		※ 사업비 조기집행 계획, 전년도집행을						
	사후유지 관리 /사업추진 의지	유지관리시스템 운영수준	※ 데이터 연계 수준						
		유수율 성과유지 노력	※ 0000년 기준, 사업대상지역 유수율 00.0% (기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만 작성)						
		절감된 운영비 재투자	※ 유수율 제고 사업비 0,000백만원 재투자 (기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만 작성)						
		과거유수율 제고노력	※ 유수율 제고 사업비 0,000백만원 투자 (최초 정비사업 추진하는 경우만 작성)						
사업추진의지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실적 (최초 정비사업 추진하는 경우만 작성)							
	정부정책 추진의지		※ 수돗물 안전관리종합대책, 수돗물 위생관리종합대책 등 실적						
	지역균형발전		※ 인구감소지역, 성장추진지역 해당여부						
사업담당	직책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과장								
	담당자								
	실무자								

2.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

- ※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모든 실적자료는 보고서 작성 당해연도에 확보가능한 직전년도(12월 31일 기준)의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총괄원가계산서 등을 근거로 하되,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상수도 통계기준으로 평가함
- ※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보고서 작성 기준년도의 실적까지만 작성

2.1. 수도요금 현실화

1) 수도요금 인상액

○ 수도요금 인상액 : 000원

- ※ 사업착수 직전년도(12월 31일 기준) 대비, 평가당해 직전년도(12월 31일 기준) 가정용 수도요금의 인상 규모로 평가

○ 수도요금 인상실적

구분	단위	D-1 (기준년도)	사업기간						인상금액
			D	D+1	D+2	D+3	D+4	D+5	
가정용 수도요금 (조례기준)	원/m ³								

2) 수도요금 인상계획의 구체성

○ 향후 수도요금 인상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예) 우리 000군은 수도요금 인상관련 조례를 0000년 00월 00일 지방의회의 승인 받음

- ※ 지자체 수도요금 인상계획서 및 관련조례 첨부
- ※ 가정용 수도요금 인상계획 기준으로 작성

3) 원가절감실적

○ 원가절감은 항목별로 작성

구분		단위	D-1	사업기간						비고
				D	D+1	D+2	D+3	D+4	D+5	
인력 운영비	인원수	명								인원수 감소율
	절감률	%								
수선유지 교체비	비용	백만원								총액 감소율
	절감률	%								

※ 3차년도 최초 평가당시 총괄원가계산서 또는 상수도통계의 기준년도가 사업착수 직전
년도(D-1) 일 경우 해당 항목 미기입

2.2. 운영관리 효율화

1) 우수제품 사용실적

구분		단위	D-1	사업기간						비고
				D	D+1	D+2	D+3	D+4	D+5	
당해연도 예산		백만원								
사용실적		백만원								
사용률		%								

※ 당해연도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 합계를 기입

2) 광역자치단체의 노력(0000년 기준)

구분		당해연도 예산		비고
		금액(백만원)	비율(%)	
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 광역자치단체의 예산투입시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득한 근거 제출

3) 노후시설 조기정비 노력

○ 사업비 조기집행실적(국비기준)

- ※ 평가기준년도 상반기 조기집행실적/집행율 기재
-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전 교부된 국비 우선집행이나, 지자체 추경예산 성립 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 실적 등

○ 사업비 집행실적(국비기준)

- ※ 평가기준년도 하반기 집행실적/집행율 기재

4) 사후유지관리/사업추진의지

○ 유지관리시스템 운영수준

- ※ 유역수도운영지원 시스템 유수율 데이터 연계여부 기재(지자체 전체 유수율 및 대블록/중블록/소블록 연계여부)
- ※ 상수도(정수동 및 관망) 통합 DB구축 여부 기재

- ※ 데이터 연계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 유수율 성과유지노력

- ※ 기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 완료한 지자체만 제출

구분		유수수량(m ³ /년)	공급량(m ³ /년)	유수율(%)	비고
기존 완료 사업명 (0000년~0000년)		※성과판정합격 유수수량 기입	※성과판정합격 공급량 기입	※성과판정합격 유수율 기입	
	계				
	00급수구역				
0000년 기준 유수율	00급수구역				
	00급수구역				
	00급수구역				

- ※ 기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완료한 사업대상지의 유수율 실적

- ※ 유수율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 절감된 운영비 재투자

※ 기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 완료한 지자체만 작성하여 제출

구분		단위	0000년 (D-3년)	0000년 (D-2년)	0000년 (D-1년)	평균	비고
절감된 운영비		백만원	※ 성과판정합격 실적기준				
유수율 제고 사업비	계	백만원					
	00관망교체						
	000 사업						
	000 사업						
재투자비율		%					

※ 유수율 제고 사업비 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단, 국고 실적은 미포함)

※ 과거 3년간 유수율 제고 관련 평균 집행 또는 발주금액(원/년) ÷ 절감된 운영비(원/년)

○ 과거 유수율 제고노력

※ 최초로 신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만 작성하여 제출

구분		단위	0000년 (D-3년)	0000년 (D-2년)	0000년 (D-1년)	평균	비고
급수수익		백만원					
유수율 제고 사업비	계	백만원					
	00관망교체						
	000 사업						
	000 사업						
투자비율		%					

※ 유수율 제고 사업비 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단, 국고 실적은 미포함)

※ 과거 3년간 유수율 제고 관련 평균 집행 또는 발주금액(원/년) ÷ 급수수익(원/년)

○ 사업추진의지

※ 최초로 신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만 작성하여 제출

- ※ 수도정비 기본계획 현실화(0000년)
- ※ 상수관망 기술진단 시행(0000년)
-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 기타 중점관리지역 해제, 노후재질관 교체계획 수립 등

- ※ 최근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부분변경) 관련 환경부 승인공문, 요약보고서 등 근거자료 제출
- ※ 상수관망 기술진단에 따른 노후관망에 대한 원인 분석, 불량 및 심각한 블록에 대한 개량 방안, 상수도관망에 대한 종합적인 구축방안 등 관련 요약보고서 등 근거자료 제출
- ※ 상수도관망 세척 연차별 시행 계획, 연차별 목표유수율 설정 및 세부 실행계획, 상수도관망시설 점검·정비계획, 상수도관망시설 정보관리계획, 그 밖에 시설안정화 및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관련 요약보고서 등 근거자료 제출
- ※ 중점관리지역 해제계획, 노후재질관 교체계획 수립 등 관련 요약보고서 등 근거자료 제출

2.3. 기타

1) 정부정책 추진의지

- ※ 수도물 안전관리 종합대책(2019,환경부) 관련 이행실적
- ※ 수도물 위생관리 종합대책(2020,환경부) 관련 이행실적
- ※ 수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통합 관련 이행실적
- ※ 기타 정부정책 이행실적

- ※ 수도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 중점관리지역 선정, 수질검사 강화, 운영인력 전문성 제고(수계전환교육·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만족), 사고대응 매뉴얼 개편, 수도물 안심확인제 등 이행실적 근거자료 제출
- ※ 수도물 위생관리 종합대책 : 소형생물 유입 차단(방충망 설치 등),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 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개편, 운영인력 전문성 제고(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만족, 전문교육 이수 등), 대국민 정보제공 및 소통강화, 수도물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 개정, 담당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 이행실적 근거자료 제출

2) 지역균형발전

- ※ 인구감소지역 해당 / 미해당
- ※ 성장촉진지역 해당 / 미해당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성장촉진지역

